



제10호 2021
e-세계농업

- ❖ 미국의 활동적 농업인, 농업경영체, 가족농의 정의
- ❖ USDA 농업전망 2030: 농업 소득
- ❖ USDA 농업전망 2030: 축산부문
- ❖ 국제농업정보
 - (1) 글로벌
 - (2) 미국
 - (3) 유럽
 - (4) 일본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명예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경 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 상 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명 기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 자 춘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 한 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손 학 기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 대 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학 균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 명 근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전 남 대 학 교 김 윤 형 교 수

충 남 대 학 교 한 석 호 교 수

「e-세계농업」은 홈페이지(<https://www.krei.re.kr/wldagr/index.d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담당

김 수 석 명예선임연구위원 soosuk@krei.re.kr (Tel. 061-820-2284)

김 상 현 부 연구위원 sanghyun@krei.re.kr (Tel. 061-820-2280)

김 령 임 연구위원 ryongimkim@krei.re.kr (Tel. 061-820-2231)



미국의 활동적 농업인, 농업경영체, 가족농의 정의

임 소 영* · 조 승 연**

☞ 미국에서는 정책지원 대상으로서 적극적으로 농업에 참여(Actively Engaged in Farming, AEF)한 사람의 자격요건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그 외 일반적인 현황 파악이나 통계작성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또는 가족농이라는 개념을 폭넓게 활용 ☞

1 미국의 정책지원 대상으로서의 활동적 농업인

- 미국 농무부(USDA)가 제공하는 주요 농업경영체 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품목별 농업경영체 지원, 재해 지원, 조정지원, 환경보전, 위험관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개인이나 법인체 등 농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함.
- 설탕생산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별 농업경영체 지원 프로그램은 농업경영체를 운영하는 농업인이 적극적으로 농업에 참여(Actively Engaged in Farming, AEF)하는 것을 수혜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 반면, 재해지원, 조정지원, 환경보전, 위험관리 프로그램은 AEF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사실상 농업인 및 비농업인 농업경영체 모두를 대상으로 함.
- 미국 2018년 농업법(farm bill)은 농업경영체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AEF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2018년 농업법에 제시되어 있는 개괄적인 AEF의 요건은 (1) 농업활동을 위한 자본, 장비, 토지, 노동력과 같은 생산요소 제공에 상당한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를 하며, (2) 생산요소 제공의 기여도에 비례하여 농업이윤이 귀속되고, (3) 농업경영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는 것임(2018년 미국 농업법 1308조 1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sylim@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sycho@krei.re.kr)



미국의 활동적 농업인, 농업경영체, 가족농의 정의

표 1. USDA 제공 주요 농업경영체지원 프로그램과 수혜 자격조건과 지급액, 2018년 농업법 |

프로그램	AEF	미국인	AGI ² 한도	환경보전준수규정 ³	지급액 한도
품목별 농업경영체지원 프로그램					
· 가격손실보상 및 수입손실보상	X ¹	—	\$900,000	X	· 작물재배연도 당 \$125,000
· 유통지원 용자혜택	X	—	\$900,000	X	· 한도없음
· 면화생산 비용보조	X	—	\$900,000	X	· 작물재배연도 당 \$40,000
· 설탕생산지원 프로그램	—	—	—	—	· 한도없음
· 시장촉진프로그램: 옥수수, 수수, 대두, 육지 면화, 밀	X	—	\$900,000	X	· 작물재배연도 당 \$125,000
· 시장촉진프로그램: 양돈, 낙농	X	—	\$900,000	X	· 작물재배연도 당 \$125,000
· 시장촉진프로그램: 아몬드, 체리	X	—	\$900,000	X	· 작물재배연도 당 \$125,000
재해지원 프로그램					
· 축산 사료 재해지원	—	X	\$900,000	X	· 작물재배연도 당 \$125,000
· 축산, 양봉, 양식업 농업경영체 긴급지원	—	X		X	· 한도없음
· 축산경영체 보상	—	X		X	· 한도없음
· 산림경영체 보상	—	X		X	· 한도없음
· 무보험 농작물 재해지원	—	X		X	· 작물재배연도 당 \$125,000
· 무보험 농작물 재해지원(추가)	—	X		X	· 작물재배연도 당 \$125,000
조경지원 프로그램					
· 긴급보전 프로그램	—	—	\$900,000	X	· 재해발생 당 \$500,000
· 긴급 산림복구 프로그램	—	—		X	· 재해발생 당 \$500,000
· 긴급 유역지원 프로그램	—	—	—	X	· 습지면적에 비례
환경보전 프로그램					
· 환경보전 지역지원 프로그램	—	—	\$900,000	X	· 회계연도 당 \$50,000
· 환경보전 의무 프로그램	—	—		X	· 회계연도 2019-2020년 동안 모든 경우에 대해 \$200,000
· 환경개선 장려 프로그램	—	—		X	· 회계연도 2019-2020년 동안 모든 경우에 대해 \$450,000
· 농업경영지원 프로그램	—	—		X	· 회계연도 당 \$50,000
· 농업환경보전지역권 프로그램	—	—		X	· 지역권 가치에 비례
· 환경보전지역협력 프로그램	—	—		X	· 한도없음
위험관리 프로그램					
· 낙농위험관리 프로그램	—	—	—	X	· 한도없음
· 농작물 보험료 지원	—	—	—	X	· 한도없음
· 농작물 보험금 지원	—	—	—	X	· 한도없음
기타					
· 무역분쟁으로 인한 농업인 손실 지원	X	X	X	—	· 36개월 동안 \$12,000

주 1) "X" 는 해당 사항을 요건으로, "—" 표시는 해당 사항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2) AGI란 농업경영체의 총소득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을 말함. AGI는 해당연도 이전 3개년의 평균값을 USDA에 보고해야 함.

3) 침식가능성이 있는 농지를 보호하고, 습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함.

자료: U.S. Farm Program Eligibility and Payment Limits Under the 2018 Farm Bill,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19)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미국의 활동적 농업인, 농업경영체, 가족농의 정의

- 농업에 적극적으로 참여(AEF)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기업(corporation), 합자회사(joint stock company), 협회(association), 유한책임조합(limited partnership),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zation)와 같은 조직체를 의미하는데, 농업법에선 이들을 (1) 개인(Person), (2) 공동경영(Joint operation), (3) 기업(Corporation)으로 구분하여 AEF의 요건에 차이를 두고 있음.

표 2. 농업법 상 농업경영 주체별 적극적 참여(AEF) 요건

주체	요건
개인 (Person)	1. 농업경영에 필요한 자본, 장비, 농지, 적극적 노동 ¹⁾ (active personal labor) 및 경영 ²⁾ (active personal management)의 제공에 상당한 기여를 하며, 2. 농업경영의 결과 발생하는 이윤 혹은 손실이 생산요소 제공에 상응하고, 3. 농업경영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할 것 [예외사항] ①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이라도 AEF에 해당되면, 다른 한 사람도 AEF를 인정함. ② 농업 주경영자가 AEF에 해당되면, 직계존비속 또는 일가친척이 농업경영에 참여하여 소득을 얻을 때 이들도 AEF에 해당함. ③ 농지제공 지주(landowner)는 요건 2와 3을 만족시키면 AEF에 해당함.
공동경영 (Joint operation)	1. 각 경영자가 개인(Persons)의 AEF에 해당되며, 2. 각 경영자의 적극적 노동 및 경영의 제공은 식별 및 증명 가능해야 하며, 3. 각 경영자의 적극적 노동 및 경영제공이 농업경영의 이윤에 상응해야 함. [예외사항] ① 공동경영체 소유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임차없이) 각 경영자는 자동적으로 AEF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
기업 (Corporation)	1. 기업이 자본, 장비, 농지의 제공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2. 농업경영에 필요한 개별적 이해관계자의 노동, 경영의 제공이 식별 및 증명 가능하며, 3. 상(商)회원(corporate members)의 총체적 기여가 농업경영에 상응하며, 4. 개인(persons)의 2, 3번의 요건을 만족할 것. [예외사항] ① 기업소유의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임차없이) AEF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간주

자료: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9), pp.7-8.

- AEF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함.
 - **[자격관련]** 농업경영자 개인(외국인포함)의 경우 이름과 주소, 사회보장번호(SSN)가 필요함. 농업 경영체의 경우 경영체의 이름과 주소, 납세자식별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피고용인식별번호(Employee Identification Number, EIN)가 필요함.
 - **[농업경영관련]** 농업경영자와 경영 비율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류인 CCC-901(Member's Information)과 각 농업경영자의 자본, 농지, 장비, 적극적 노동 및 경영의 제공이 전체 농업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입한 CCC-902(Farm Operation Plan)를 USDA에 제출해야 함.³⁾

1) 적극적 노동의 제공은 농지 준비, 경종, 추수, 농산물 판매와 같은 농업경영에 개인당 연간 1,000시간 이상 또는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간의 50% 이상의 투입을 의미함.
 2) 적극적 경영은 자본재 구입 및 관리, 노동력 관리, 농산물 판매와 같은 농업경영에 농업이윤에 상응하는 정도로 참여함을 의미함.



미국의 활동적 농업인, 농업경영체, 가족농의 정의

| 그림 1. 미국 농무부(USDA) 농업인 자격 정보제공 확인서 |

CCC-901 (02-10-16)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1. County	
MEMBER'S INFORMATION Agricultural Act of 2014				2. State	
				3. Program Year	
<p>NOTE: The following statement i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rivacy Act of 1974 (5 USC 552a – as amended). The authority for requesting the information identified on this form is 7 CFR Part 1400, the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Charter Act (15 U.S.C. 714 et seq.), and the Agricultural Act of 2014 (Pub. L. 113-70). The information will be used to identify members of a legal entity. The information collected on this form may be disclosed to other Federal, State, Local government agencies, Tribal agencies, and nongovernmental entities that have been authorized access to the information by statute or regulation and/or as described in applicable Routine Uses identified in the System of Records Notice for USDA/FSA-2, Farm Records File (Automated). Providing the requested information is voluntary. However, failure to furnish the requested information will result in a determination of ineligibility for program benefits.</p> <p>This information collection is exempted from the Paperwork Reduction Act as specified in the Agricultural Act of 2014 (Pub. L. 113-79, Title I, Subtitle F, Administration). The provisions of criminal and civil fraud, privacy, and other statutes may be applicable to the information provided. RETURN THIS COMPLETED FORM TO YOUR COUNTY FSA OFFICE.</p>					
<p>PART A - For each individual or entity who is a member of this entity, list the member's name, social security/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address and percentage share of ownership. If a member has both types of identification numbers, list both.</p>					
Name of Legal Entity		Complete Tax ID Number			
1. Member's Name	2. SSN or Tax ID Number (Last 4 digits if already on file)	3. Address	4. Percent Share	5. Does this member have signature authority for the legal entity? (Yes or No)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p>PART B - Embedded Entities: For any member listed in Part A, who is an entity, list such embedded entity's name and list the requested information for each member of such entity. If a member has both types of identification numbers, list both. If more than one member, listed in Part A is an entity, provide the requested information for each entity on supplemental sheets.</p>					
Name of Embedded Legal Entity		Complete Tax ID Number			
1. Member's Name	2. SSN or Tax ID Number (Last 4 digits if already on file)	3. Address	4. Percent Share	5. Does this member have signature authority for the legal entity? (Yes or No)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자료: 미국 농무부(USDA)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3) 매년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농지취득이나 새로운 가족원 추가 등 농업경영에 큰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제출이 필요함.



미국의 활동적 농업인, 농업경영체, 가족농의 정의

| 그림 2. 미국 농무부(USDA) 농업 경영활동 확인서 |

CCC-902E (12-22-08)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1. County	3. Program Year
FARM OPERATING PLAN FOR AN ENTITY 2009 and Subsequent Program Years				2. State	
For "actively engaged in farming" and other payment eligibility/limitation determinations.					
This form is to be completed for an entity, including a joint operation, that is seeking benefits from the Farm Service Agency (FSA) under one or more programs that are subject to the regulations at 7 CFR Part 1400. This form collects farming and other information about the entity that receives program benefits directly using the tax identification number listed in Part A. This form also collects information about the members of such entity. An individual who receives program benefits directly as an individual must complete a CCC-902I with respect to that individual's operation. Payment eligibility is based upon the contribution of certain inputs to a farming operation such as land, capital, equipment, labor, and management by the entity listed in Part A. The information on this form will be used by FSA to determine payment eligibility and limitation of payments by direct attribution.					
PART A - ENTITY INFORMATION					
1. Entity's Name and Address (Include Zip Code)			2. Tax Identification Number (If the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s already on file with FSA, only the last 4 digits are required)		
			3. Date of Formation (MM-DD-YYYY)		
PART B - TYPE OF OPERATION (Select only one)					
1. Select appropriate type of operation that defines the entity identified in Part A:					
<input type="checkbox"/> General Partnership <input type="checkbox"/> Joint Venture <input type="checkbox"/> Indian Tribe <input type="checkbox"/> Corporation		<input type="checkbox"/> Limited Partnership <input type="checkbox"/> Limited Liability Company <input type="checkbox"/> Revocable/Living Trust <input type="checkbox"/> Irrevocable Trust		<input type="checkbox"/> Estate <input type="checkbox"/> Charitable/Tax-exempt Organization <input type="checkbox"/> Public School <input type="checkbox"/> City, County or State-owned Entity <input type="checkbox"/> Other: _____	
2. Supporting documentation (such as articles of incorporation, trust papers, partnership agreement, evidence of heirship, and operational authorities of all shareholders, members and owners) is required, except for public schools, States, State entities, cities, and counties, to verify the legal status of the entity and the authority of its shareholders, members or owners to the satisfaction of CCC.					
PART C - MEMBER INFORMATION					
1. Members - List all members/interest holders of the entity identified in Part A of this form:					
A. Name (If member is a minor child, also complete Item F)	B. Tax ID Number (If Taxpayer ID No., is already on file list last 4 digits)	C. % Share	D. Position and Salary (If applicable)	E. Family Member Relationship	F. Enter Date of Birth for any member under 18 years old as of April 1
			\$		
			\$		
			\$		
			\$		
			\$		
			\$		
2. If the entity in Part A is an Estate or Trust, enter information on the Executor, Administrator or Grantor.		A. Name		B. Title	
3. Embedded Entities - A CCC-901, Member's Information, must also be completed and submitted concurrent with this CCC-902E if any member or interest holder of the entity identified in Part A is an entity.					
					<input type="checkbox"/> Check if CCC-901 is attached.

자료: 미국 농무부(USDA) 상품신용공사(Commodity Credit Corporation)

- 가족 중 한 사람이 AEF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에 참여하는 직계존비속 등의 가족농 구성원도 AEF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음.⁴⁾

4) 때로는 이러한 조항이 농업경영체 지원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의견도 있음. 일부 농업인들은 보조금 상한을 높이기 위하여 AEF 자격에서 거리가 먼 친척을 공동경영체 또는 법인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CBS뉴스 2019.07.03).



미국의 활동적 농업인, 농업경영체, 가족농의 정의

2 미국의 농업경영체 정의

- 농업경영체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으나 통계적 관점에서 미국 정부는 일정 금액 이상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주체를 농업경영체(Farm)로 정의하고 있음.
 - 미국 농무부(USDA), 행정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미국통계국(US Census)은 1975년부터 농업경영체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000 이상일 경우 농업경영체(Farm)로 정의하기로 함.
 - 그러나 기상이변, 재해, 시장환경의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판매액이 \$1,000 미만이 되는 경우를 감안하여, 농산물 판매액이 \$1,000을 넘지 못하더라도 작물규모와 가축두수를 고려했을 때 해당 기준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되면 이를 농업경영체로 간주함.⁵⁾
- 농업경영체는 조세법 상 연방소득세 과세기준이기도 함.
 - 미국 조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 제2032조에는 과세 목적으로 농업경영체(farm)를 낙농, 축산, 과채, 경작, 대농장, 대목장 운영 및 경영 등의 활동을 통해 농업, 원예, 과수, 임산물 등을 생산하는 조직(structure)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농업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농업인의 정의에 비해, 가족농에 대한 통일된 정의나 개념체계는 정립되지 않음.
 - 예를 들면, 미국연방규정집, 미국 농무부(USDA)보고서, 농업 관련 기관이 가족농의 정의와 요건에 대해 서로 다르게 규정함.
 - 이는 가족농의 개념 및 정의가 정책 대상을 구분하기보다는 농가경제실태의 파악을 위한 통계생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5) 작물규모와 가축두수를 고려하여 점수(point)를 계산하는데 1점이 \$1에 해당함. 연간 농산물 판매액, 정부지원금(Government payment), 점수로 계산한 가상적 농산물 판매액의 총계가 \$1,000 이상이라면 이러한 경영체도 농업경영체에 포함하며 점수농(point farm)이라고 분류함. 점수농은 미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USDA-ERS), 농업자원관리조사(Agricultural Management Survey, ARMS), 농업통계국(Census of Agriculture) 등 통계생산을 위해 농업경영체를 판별하기 위한 개념이며, 미국 농업법에서 인정하는 농업경영체 지원프로그램의 자격 인정 기준과는 무관함.



미국의 활동적 농업인, 농업경영체, 가족농의 정의

| 표 3. 가족농에 대한 다양한 개념 및 정의 |

	요건
미연방규정집(Codes of federal regulations) 제761조 2항	(1) 농촌에 정주하는 정도가 아닌 충분한 양의 농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생산하며, (2) 매일 이루어지는 농업관련 의사결정, 전략적 경영, 농장운영에 필요한 상당한 노동력이 개인 혹은 혈연, 혼인관계,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들이 농업경영에 책임을 지며, (3) 오직 가족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고용노동력을 사용하며, (4) 농번기나 간헐적인 노동집약적 농작업 수행 시 임시노동력을 사용하는 농업 경영체
미농무부 식품농업연구소(USDA-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	(1) 소유권, 동업관계, 가족경영의 특성을 갖는 농장(비가족 경영체이거나 고용된 관리자를 두는 경우는 가족농이라 할 수 없음)
미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 (USDA-ERS), 2019 America's diverse family farms	(1) 매일 이루어지는(day-to-day) 농업경영 의사결정에 책임을 지는 주경영자 (principal operator)와 주경영자와 관련된(related) 개인(individuals)이 농업 경영체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농가
미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 (USDA-ERS), Exploring alternative farm definitions, Economic information bulletin number 49, 2009	(1) 농업경영자 또는 농업경영자의 혈연, 혼인, 입양관계인 사람이 50% 이상의 농업경영체(business)를 소유한다면 가족농이라 지정
미 농무부, 농업경제연구소 (USDA-ERS), Farm household well-being, glossary	(1) 농업경영자 혹은 농업경영자와 혈연, 혼인, 입양,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농업경영체 대부분을 소유하는 농가
Hoppe(2014) Structure and Finances of U.S. Farms: Family Farm Report, 2014 Edition	(1) 경영주와 경영주의 친인척을 포함하는 경영주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농업 경영체의 대부분을 소유하는 농가

자료: 저자 정리

- 가족농의 정의 및 요건은 다양하지만 가족 중심의 농업경영체 소유와 경영이 제시된다는 공통점이 있음.
- 농업자원관리조사(Agri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urvey: ARMS)는 Hoppe(2014)의 가족농 구분 기준을 토대로 가족농 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가족농을 엄격히 정의하기보다는 총 현금 농업소득 (Gross Cash Farm Income: CFGI)를 기준으로 가족농을 구분하고 비가족농을 판별하여 다양한 미국 농가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음.
- Hoppe(2014)는 2011년 기준 미국에서 가족농이 모든 농업경영체의 97%에 이를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농업경영체의 단위를 판단하는 기본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 가족농을 경영주의 직업상태와 연간 농산물 판매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분류함.



미국의 활동적 농업인, 농업경영체, 가족농의 정의

표 4. 경영주의 주직업과 연간 농산물 판매액에 따른 가족농 분류

구분	유형	경영주의 주직업 ¹	총현금농업소득(GCFI) ²
가족농	소규모 가족농		\$350,000 미만
	- 은퇴가족농	은퇴	\$350,000 미만
	- 농장 외(off-farm) 직업 가족농 ³	비농업(non-farm)	\$350,000 미만
	- 직업가족농		
	· 판매규모 작음	농업	\$150,000 미만
	· 판매규모 보통	농업	\$150,000-\$349,000
	중간규모 가족농	고려사항 아님	\$350,000-\$999,999
	대규모 가족농	고려사항 아님	\$1,000,000 이상
	- 대형 가족농	고려사항 아님	\$1,000,000-\$4,999,999
- 초대형 가족농	고려사항 아님	\$5,000,000 이상	
비가족농		고려사항 아님	미해당

주 1) 경영주가 50% 이상의 근로시간을 투입하는 직업

2) 총현금농업소득(Gross cash farm income, GCFI); 농산물, 축산물 판매소득, 정부보조금, 기타 농업관련소득 등을 포함

3) 경영주가 농업근로자인 경우도 포함

자료: Hoppe(2014).

- <표 4>에 제시된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농업경영체 분포를 살펴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가족농이 미국 농업경영체 중 약 97%를 차지하며, 나머지 3%의 비가족농이 전체 생산액의 약 15%를 차지함.
 - 연간 총 농업소득(GCFI) \$350,000 미만의 소규모 가족농이 미국 농업경영체 중 약 90%를 차지하나 이들이 생산액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2% 정도임.
- 반면, 전체 농업경영체 중 8%에 해당하는 중간규모 및 대규모 가족농의 생산액이 전체 생산액 중 약 60%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화됨.
- 전체 농업경영체 중 약 50%가 은퇴농 또는 농장 외 직업 가족농이지만 이들 농업경영체의 생산액은 전체 농업경영체 생산액의 7% 정도에 불과함.
- 가족농의 평균 경지면적은 생산액에 비례하나, 비가족농의 평균 경지면적이 1,540에이커에 이를 정도로 규모화됨.
- 은퇴가족농, 농장 외 직업 가족농, 판매규모가 작은 소규모 가족농은 자기소유농지의 이용비율이 크지만 (적어도 65% 이상), 중간규모 및 대규모 가족농과 비가족농은 부분 소유 또는 임차농지를 이용하는 비율이 큼.



미국의 활동적 농업인, 농업경영체, 가족농의 정의

표 5. 미국 농업경영체 유형별 분류, 2011년

구분	소규모 가족농				중간 규모 가족농	대규모 가족농		비 가족농	전체	
	은퇴 가족농	농장 외 직업 가족농	소규모 판매농	중규모 판매농		대규모	초대형 규모			
전체호수	353,922	909,872	567,214	118,253	123,009	38,541	3,857	58,175	2,172,843	
농업경영체 수 비중	16.3	41.9	26.1	5.4	5.7	1.8	0.2	2.7	100.0	
생산액 비중	1.5	5.1	6.8	12.0	24.8	23.7	11.3	14.7	100.0	
C G F I (\$) 1	1천 미만	29.0	30.5	15.7				17.9	22.0	
	1천~1만 미만	43.2	40.3	30.0				18.6	32.2	
	1만~10만 미만	24.6	25.5	44.9				28.6	27.2	
	10만~15만 미만	1.5	1.6	9.4				7.1	3.6	
	15만~35만 미만	1.8	2.1		100.0			5.8	6.8	
	35만~50만 미만					42.8		5.0	2.6	
	50만~100만 미만					57.2		6.2	3.4	
	100만~500만 미만						100.0	8.1	2.0	
	500만~1,000만 미만							66.6	1.3	
	1,000만 이상							33.4	1.5	
경지면적 (중간값, 에이커)	68.0	50.0	92.0	427.0	898.0	2,035.0	2,480.0	143.0	83.0	
경지면적 (평균, 에이커)	166.0	145.0	279.0	1,022.0	1,587.0	3,309.0	4,927.0	1,547.0	415.0	
평균노동투입 (1단위=2,000시간)	0.7	0.7	1.2	2.6	3.5	8,006.0	38.6	4.9	1.4	
비중(%)	경영주	57.2	61.1	65.2	55.3	40.7	18.1	3.7	14.2	46.5
	배우자	16.4	20.8	16.5	14.3	9.6	4.0	1.0	2.2	12.8
	고용노동자	16.0	7.8	8.6	14.9	33.9	57.6	74.4	52.1	25.7
	계약노동자	1.6	1.5	1.8	3.4	4.3	10.6	18.1	22.7	6.0
농지소유형태										
비중(%)	완전자기소유	87.0	73.5	64.9	31.6	15.6	13.0	23.4	59.2	66.4
	부분 소유	11.6	22.2	29.0	54.7	72.7	70.6	56.5	26.7	27.9
	임차	1.4	4.3	6.1	13.7	11.7	16.3	20.2	14.1	5.7

주: 총현금농업소득(Gross Cash Farm Income, GCFI)은 농산물 및 축산물 판매소득, 정부보조금, 기타 농업관련소득 등을 포함
 자료: Hoppe(2014).



미국의 활동적 농업인, 농업경영체, 가족농의 정의

참고문헌

-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9. "U.S. Farm Program Eligibility and Payment Limits under the 2018 Farm Bill".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 USDA. CCC-901 Form: Member's Information-Agricultural Act of 2014. Commodity Credit Information,
- USDA. CCC-902 Form: Farm Operating Plan for an Entity: 2009 and Subsequent Program Years. Commodity Credit Information,
- USDA. Codes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7.
- Hoppe. R.A. 2014. "Structure and Finances of U.S. Farms: Family Farm Report 2014 Edition", *Economic Information Bulletin Number 132*,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 Hoppe, R.A. and Banker, D.E.. 2010. "Structure and Finances of US Farms: Family Farm Report 2010 Edition", *Economic Information Bulletin Number 66*, US Department of Agricultural Economic Research Service.



USDA 농업전망 2030: 농업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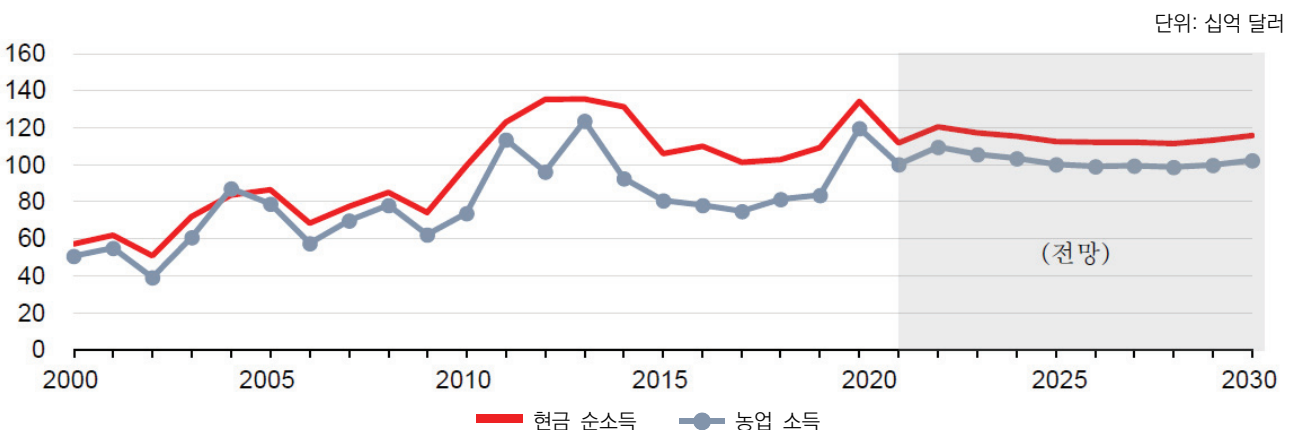
최지선*

👉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이 만료되면서, 2021년 농업 소득은 전년 대비 16.3% 감소할 전망** 👈

1 농업 소득 전망

- 2021년 농업 소득(Net farm income)과 현금 순소득(Net cash income)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¹⁾
 - 2021년 농업 소득은 전년 대비 16.3% 줄어든 1,001억 달러로 추정되며, 현금 순소득은 전년 대비 16.7% 줄어든 1,117억 달러로 추정됨.
 - 주된 감소 요인은 정부 보조금 감축임. 2020년 농가는 코로나19 지원금(Coronavirus Food Assistance Programs)으로 총 243억 달러를 지원받았음.
 - 2021년 추정치에는 「2021회계연도 통합지출승인법」 농업부문에서 지원하는 112억 달러가 포함 되어 있지 않음.

| 그림 1. 미국 농업소득 지표, 2000-30년 |



주: 회색 음영 부분은 추정치를 나타냄.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 연구 서비스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추정치는 2020년 12월에 산출됨. 2021년 추정치에는 「2021회계연도 통합 지출승인법」 농업부문에서 제공하는 112억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 농업·환경·개발경제학과 박사과정(choi.1546@osu.edu).
 본고는 미국 농무부가 2021년 2월에 발간한 「미국 농무부 2030년 농업전망(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30)」 보고서를 바탕으로 번역 및 요약 작성함.
 1) 농업 소득(Net farm income)은 농산물 생산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현금 순소득(Net cash income)은 농산물 판매연도를 기준으로 함. 두 소득의 차이는 재고 농산물의 생산년도와 판매연도가 달라서 발생한 것임.



USDA 농업전망 2030: 농업 소득

- 농업 현금수입(Farm cash receipts)은 국내외 미국 농축산물 수요증가로 인해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축산업 총수입은 시장 가격이 낮아지면서 2023년에 감소하겠으나,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정부 직접 지불금은 전년 대비 약 350억 달러 감소한 115억 달러로 전망됨.
 - 정부 직접 지불금은 2023-24년 잠시 증가하였다가, 2024년 이후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수입손실보상(Agriculture Risk Coverage, ARC) 지불금은 2020년 11억 달러에서 2030년 5,630만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가격손실보상(Price Loss Coverage, PLC) 2020년 50억 달러에서 2030년 44억 달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농업 경영비는 자본재와 사료에 대한 소비·지출이 늘어나면서 2021년 3,449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202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20-30년 각 연도 전망치는 <표 1>과 같음.

표 1. 농가 수입 및 지출 장기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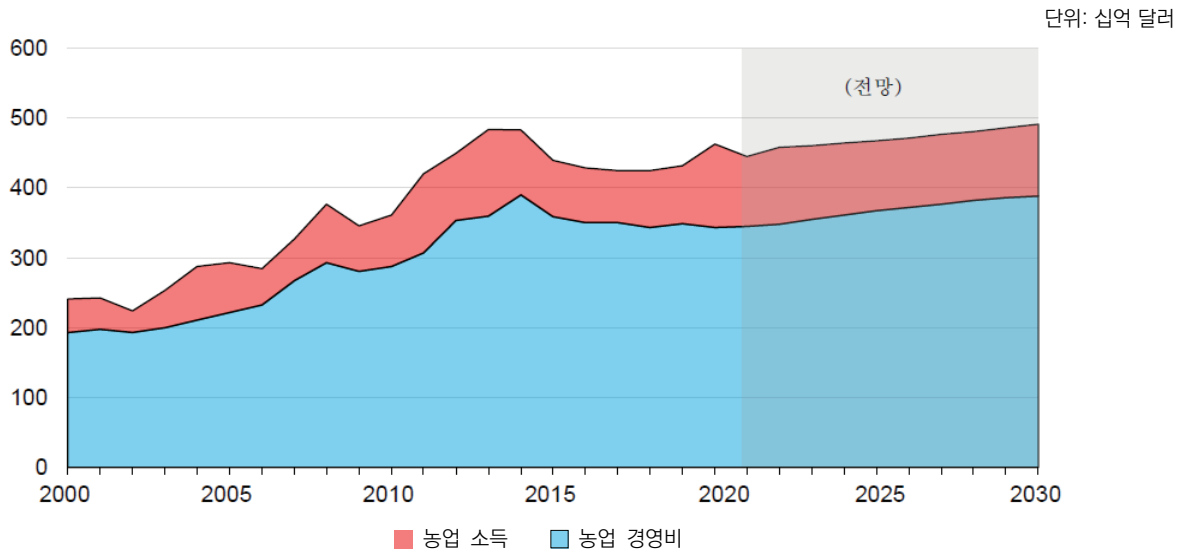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십억 달러												
현금 손익계산서(Cash Income Statement)												
현금 수입	369.7	366.5	378.8	389.5	391.1	394.1	397.0	401.3	405.2	409.1	413.8	418.5
농작물	193.7	200.2	207.0	211.6	213.9	216.1	218.4	221.1	223.7	226.6	229.8	233.2
축산물	176.0	166.3	171.8	177.9	177.2	178.0	178.6	180.3	181.5	182.5	184.0	185.3
정부 직접 보조금	22.4	46.5	11.5	11.1	11.8	12.0	11.8	11.6	11.4	11.4	11.3	11.2
농업 관련 소득	34.7	34.1	33.2	34.9	35.1	35.2	35.4	35.6	35.8	36.0	36.2	36.4
현금 총소득	426.9	447.1	423.5	435.5	438.0	441.4	444.1	448.5	452.4	456.5	461.3	466.1
현금 지출	317.5	313.0	311.8	315.1	320.9	325.9	331.5	336.3	340.3	344.9	348.1	350.2
현금 순소득	109.4	134.1	111.7	120.4	117.1	115.4	112.6	112.2	112.1	111.6	113.2	115.9
농가 손익계산서 (Farm Income Statement)												
현금 총소득	426.9	447.1	423.5	435.5	438.0	441.4	444.1	448.5	452.4	456.5	461.3	466.1
비화폐 소득	18.4	19.5	20.4	21.2	21.6	22.1	22.5	22.8	23.2	23.6	23.8	24.1
계고증감액	-12.9	-3.4	1.1	1.6	1.0	1.4	1.2	0.7	1.3	1.2	1.3	1.3
농업총수입	432.3	463.2	445.0	458.3	460.6	464.8	467.8	472.0	476.9	481.3	486.3	491.5
농업경영비	348.7	343.6	344.9	348.5	355.1	361.1	367.5	372.7	377.3	382.6	386.3	388.9
농업 소득	83.6	119.6	100.1	109.8	105.6	103.7	100.3	99.3	99.6	98.7	100.0	102.6

주: 2019년 수치는 실제 측정값이며, 장기 전망값은 2021년 2월, 단기 전망값(2021년)은 2020년 12월 계산함.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 연구 서비스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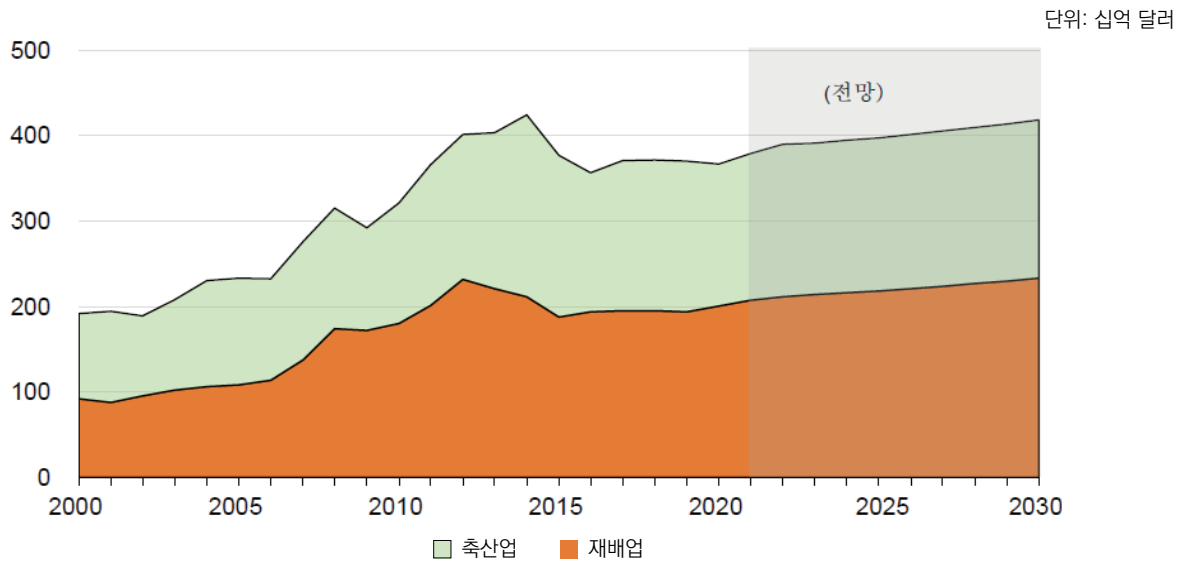
USDA 농업전망 2030: 농업 소득

| 그림 2. 미국 농업총수입, 2000-30년 |



주: 회색 음영부분은 추정치를 나타냄. 추정치는 2020년 12월에 산출됨.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 연구 서비스(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 그림 3. 미국 현금수입, 2000-30년 |



주: 회색 음영 부분은 추정치를 나타냄. 추정치는 2020년 12월에 산출됨.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 연구 서비스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2 정부 직접 지불금 전망

■ 정부 직접 지불금은 2021년 115억 달러, 2022년 111억 달러로 전망되며, 이는 2020년에 비해 약 350억 달러 감소한 금액임.

- 코로나19로 인한 긴급특별지원금(Ad hoc payments) 프로그램이 만료되고,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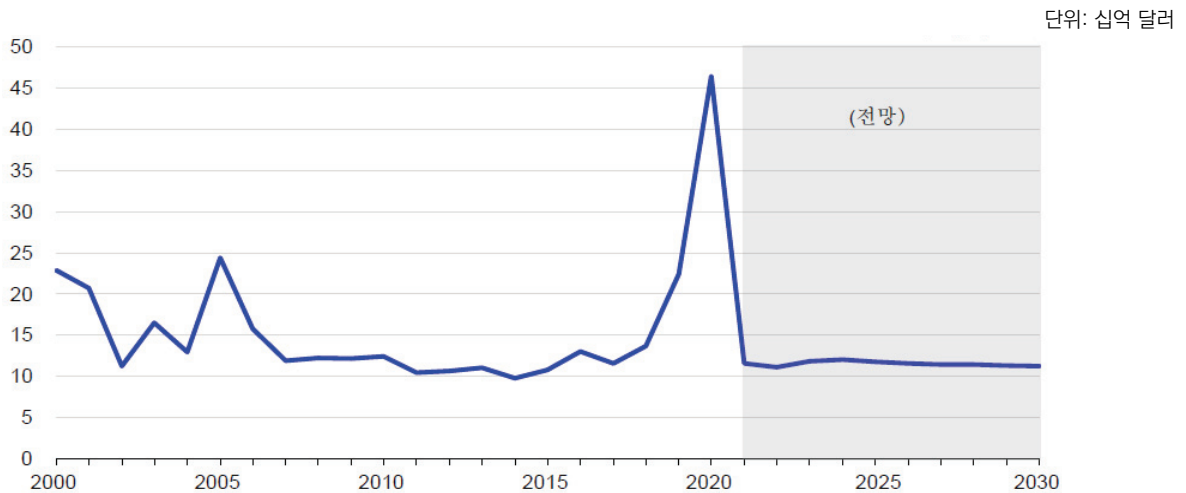


USDA 농업전망 2030: 농업 소득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본 전망치는 새롭게 시작할 가능성이 있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산출한 수치임.

| 그림 4. 미국 정부 직접 지불금, 2000-30년 |



주: 회색 음영 부분은 추정치를 나타냄. 추정치는 2020년 12월에 산출됨.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 연구 서비스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 2021-30년 정부 직접 지불금은 주로 보전유보제도(Conservation Reserve Program, CRP), 가격 손실보상(Price Loss Coverage, PLC), 수입손실보상(Agriculture Risk Coverage, ARC) 프로그램을 통해 지출될 것으로 전망됨.
- CRP 직불금이 2020년 19억 달러에서 2030년 23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CRP에 등록된 농지의 규모는 2018 농업법에서 규정한 최대한도 2,700만 에이커보다 약간 낮을 것으로 전망됨.
 -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CRP에 등록된 토지 임대료가 함께 오를 것으로 전망됨.
- PLC와 ARC 직불금은 2020년 약 61억 달러에서 2021년 이후 59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전망기간 동안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PLC와 ARC 직불금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22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한 약 55억 달러로 전망됨.
 - PLC 직불금은 옥수수과 대두 농가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2024년까지 증가하나, 2025-27년에는 옥수수과 대두 가격이 정체되고, 밀과 면화(Seed cotton) 가격이 오르면서 PLC 직불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ARC 직불금은 2024년 이후로 약보합세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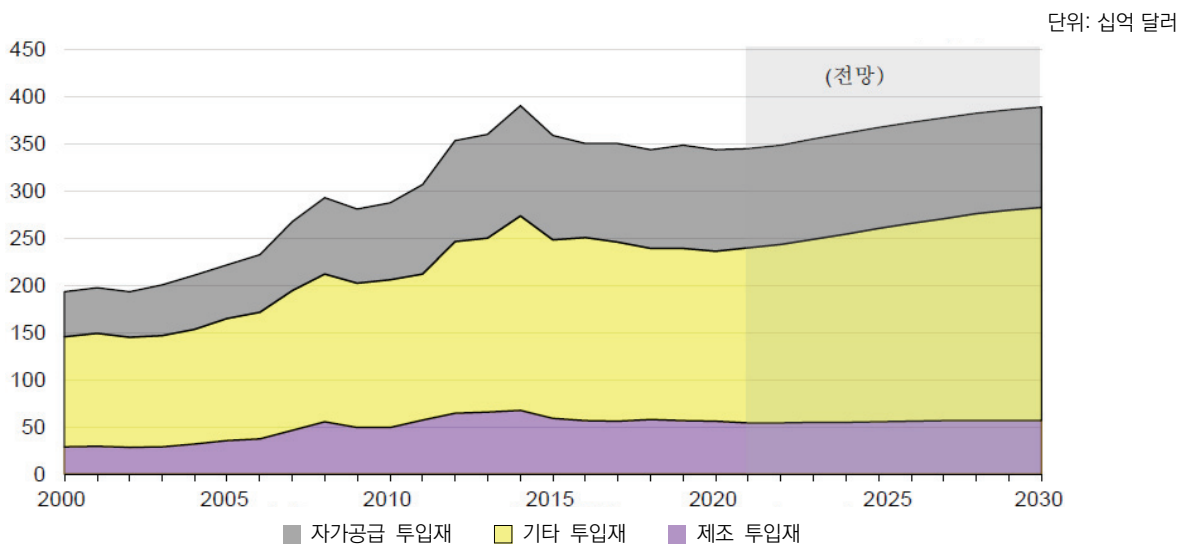


USDA 농업전망 2030: 농업 소득

3 농업 경영비 전망

- 2021년 농업 경영비는 자본재와 사료에 대한 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농업 경영비는 2020-30년 동안 매년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농업 경영비는 자가공급 투입재(farm-origin inputs), 제조 투입재(other manufactured inputs), 기타 투입재(aggregate expenses for other nonfarm-origin inputs)로 구성됨. 세 부문 투입재 가격 상승률은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나, 이자와 연료 및 기름 가격 상승률은 일반적인 물가 상승률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됨.
- 2020-30년 자본재 지출은 매년 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재산세와 임대차료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코로나19로 인해 지원된 긴급특별지원금과 낮은 금리로 인해, 2021년 농가들의 농기계 및 농기구 구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그림 5. 미국 농업경영비, 2000-30년 |



주: 회색 음영 부분은 추정치를 나타냄. 추정치는 2020년 12월에 산출됨.
 자료: 미국 농무부, 경제 연구 서비스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참고문헌

USDA. 2021.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30". *Long-Term Projections Report OCE-2021-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농업전망 2030: 축산부문

윤영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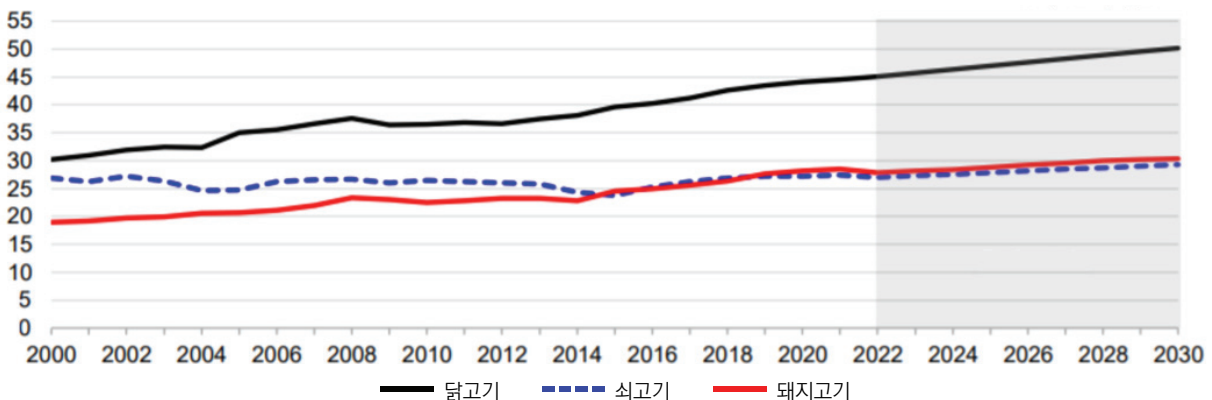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외 수요 회복은 향후 10년간 미국 축산업 부문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1 육류 생산

- 육우 사육두수는 전망기간 초기(2022~2024년) 생산자들의 낮은 수익률에 대응한 사육두수 조절로 인하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전망 초기 사육두수 감소는 육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후 사육두수 증가로 전망기간 말(2030년)까지 육우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도체중 증가는 육우 생산량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쇠고기 생산량은 대략 2022년 270억 파운드에서 2030년 293억 파운드까지 연평균 1% 미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망 초기와 말기, 돼지·사료가격 비율¹⁾은 점진적 옥수수 가격 상승과 돼지고기 가격 하락으로 대폭 하락하여 돼지의 분만을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돼지고기 생산량은 도체중 개선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돼지고기 생산량은 2022년 278억 파운드에서 2030년 303억 파운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망기간 동안 쇠고기 생산량을 상회할 것으로 보임.

그림 1. 미국 적육 및 가금육 생산량 전망

단위: 십억 파운드



주: 1파운드는 0.434kg이며, 음영 부분은 전망기간을 나타냄.
 자료: USDA(2021). p. 39.

*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박사과정(jnu7213@gmail.com).
 본 고는 미국 농무부에서 발간한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30” 중 축산부문에 대한 전망을 참고하여 작성됨.
 1) 가축의 시장 판매 가격을 가축이 소비하는 사료 가격으로 나눈 것. 가축사료가격 비율은 농민들이 사료를 얼마나 생산하고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됨. 예를 들어 100파운드의 사료가 그 사료를 먹고 사육될 가축보다 더 가치가 있다면, 농장주는 가축 생산을 줄이고 사료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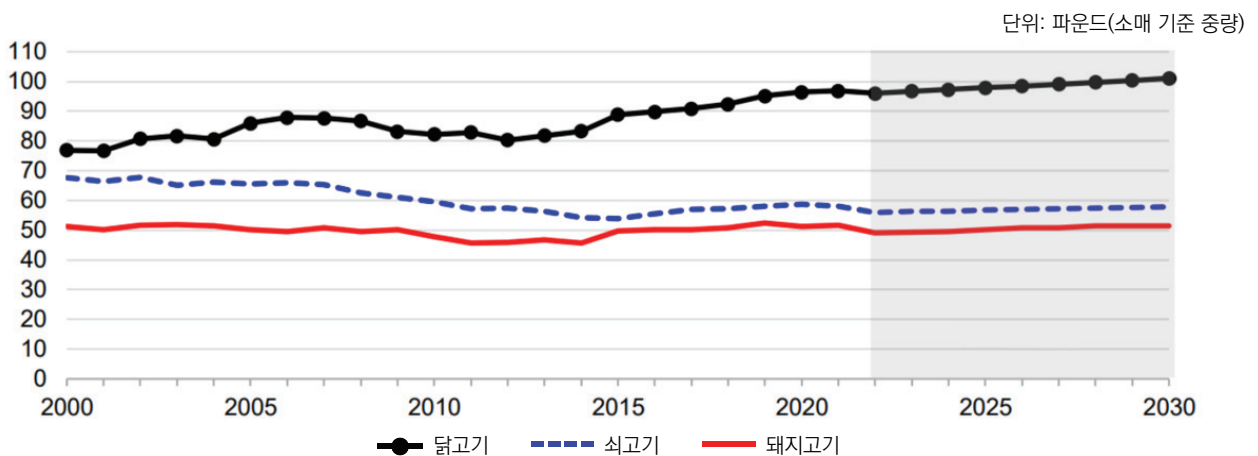
USDA 농업전망 2030: 축산부문

- 닭고기 생산량은 국내외 수요증가에 따라 전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 502억 파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칠면조고기 생산량도 수요증가로 2021년 58억 파운드에서 60억 파운드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2 육류 소비

- 1인당 적육(赤肉, 쇠고기, 송아지고기, 돼지고기, 양고기)과 가금육(닭고기, 칠면조고기 등) 소비량은 2022년 219파운드에서 2030년 228파운드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금육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 1인당 쇠고기의 소비량은 전망기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보임. 1인당 소비량은 2022년 55.9파운드로 예상되며, 2023년과 2024년 56.4파운드를 기록한 뒤, 2030년에 이르러 57.8파운드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22년 49.0파운드에서 2028년 51.4파운드로 점차 증가하여 2030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96.0파운드에서 2030년 101.1파운드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1인당 칠면조고기 소비량은 2022년 15.5파운드에서 2030년 15.0파운드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미국 1인당 육류 소비량(Meat Disappearance) 전망 |



주: 1파운드는 0.434kg이며, 음영 부분은 전망기간을 나타냄.
 자료: USDA(2021). p. 40.



USDA 농업전망 2030: 축산부문

표 1. 미국 1인당 육류 소비량(Meat Disappearance) 전망

단위: 파운드

목록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쇠고기	58.1	58.8	58	55.9	56.4	56.4	56.7	56.9	57.2	57.4	57.6	57.8
송아지고기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돼지고기	52.4	51.3	51.6	49	49.4	49.6	50.2	50.8	50.9	51.4	51.4	51.4
양고기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적육 합계	111.9	111.4	111	106.2	107.1	107.3	108.2	109	109.4	110.1	110.4	110.5
닭고기	95.1	96.4	96.9	96	96.7	97.3	97.9	98.5	99.1	99.8	100.4	101.1
기타 닭고기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칠면조고기	16	15.8	15.7	15.5	15.4	15.3	15.2	15.2	15.2	15.1	15.1	15
가금육 합계	112.5	113.7	114	112.8	113.5	114	114.5	115.1	115.7	116.3	116.9	117.6
전체 합계	224.4	225	224.9	219.1	220.6	221.3	222.7	224.1	225.1	226.4	227.3	228.1

자료: USDA(2021). p. 44.

3 육류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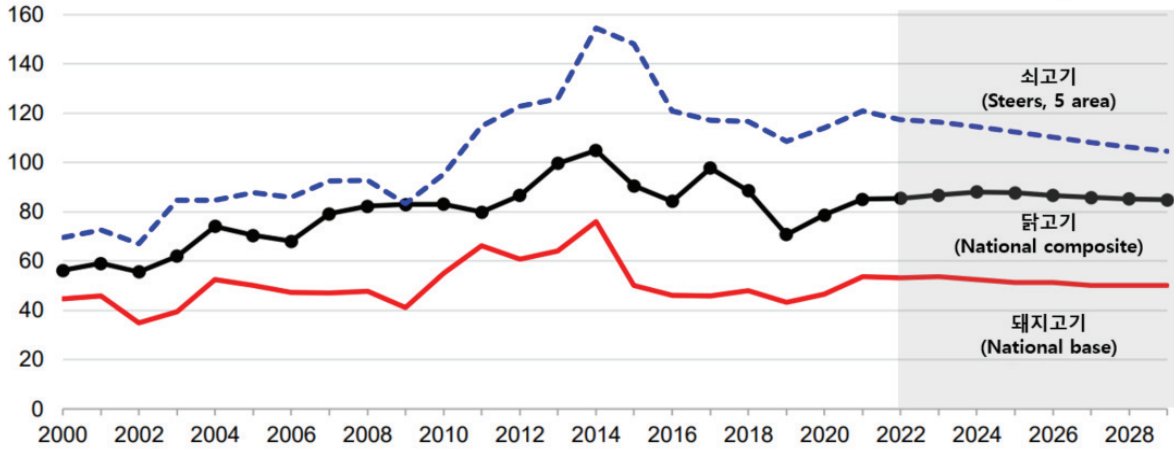
- 쇠고기와 닭고기 명목가격은 초과생산으로 인하여 전망기간 대부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돼지고기 명목가격은 전망기간 초기 소폭 상승하나 이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쇠고기 가격은 전망기간 초기인 2022년 수요 확대와 더불어 비육우 공급 부족으로 100파운드 당 121달러를 기록하지만, 이후 육우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쇠고기 생산량 증대로 105달러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돼지고기 가격은 2024년까지 상승하지만, 이후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전망기간 평균 100파운드 당 약 52달러로 전망됨. 한편, 닭고기 가격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국내외 수요 강세로 인해 2025년까지 상승하지만, 이후 육계 생산성 향상이 이를 상쇄하여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USDA 농업전망 2030: 축산부문

| 그림 3. 미국의 축산물별 명목가격 전망 |

단위: 달러/100파운드



주: 1파운드는 0.434kg이며, 음영 부분은 전망기간을 나타냄.
 자료: USDA(2021). p.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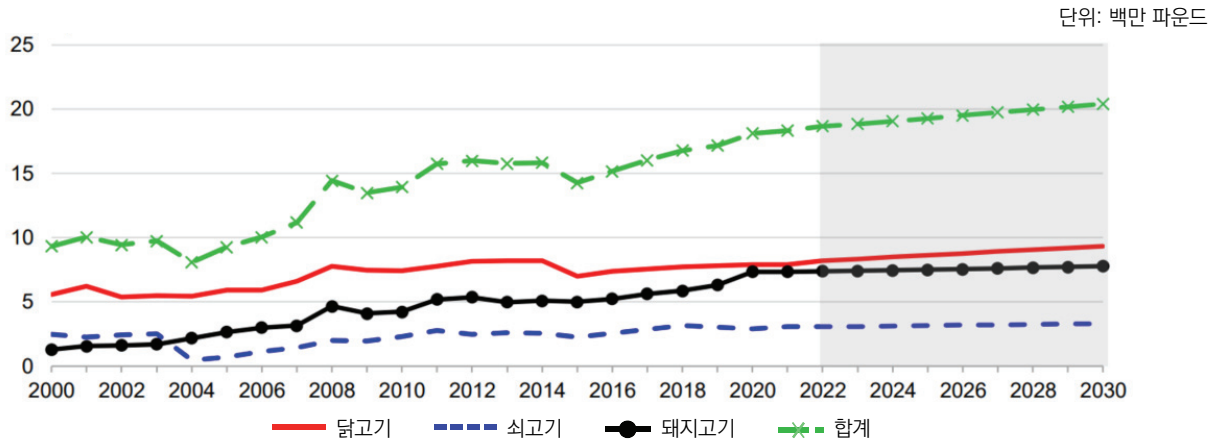
4 육류 수출

- 미국의 전체 적육과 가금육 수출은 달러화 강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성장이 미국 상품에 대한 해외 수요를 지지하여 2030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전반적인 전망기간 동안 미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수출량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계 쇠고기 생산량 증가로 인한 수출 경쟁 심화와 가공용 쇠고기에 대한 자국 내 수요증가로 인한 수입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으로 보임. 세계 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브라질에 비해 하락하여 브라질이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인도, 호주와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돼지고기 수출은 단기적으로 중국 및 기타 시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수요 지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미국은 세계 돼지고기 시장에서 브라질과 캐나다를 크게 앞서 유럽연합(EU) 다음으로 제2의 세계 돼지고기 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가금육 수출은 향후 10년 동안 육계 수출 증가에 기인하여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닭고기 수출 증가는 생산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세계 수요증가에 의해 지지될 것으로 보임. 미국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가금육 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유럽연합과 태국이 3위와 4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한편, 2030년 세계 가금육 수출시장에서 이들 4개국의 점유율은 8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USDA 농업전망 2030: 축산부문

| 그림 4. 미국 육류 수출 전망 |



주: 1파운드는 0.434kg이며, 음영 부분은 전망기간을 나타냄.
 자료: USDA(2021), p.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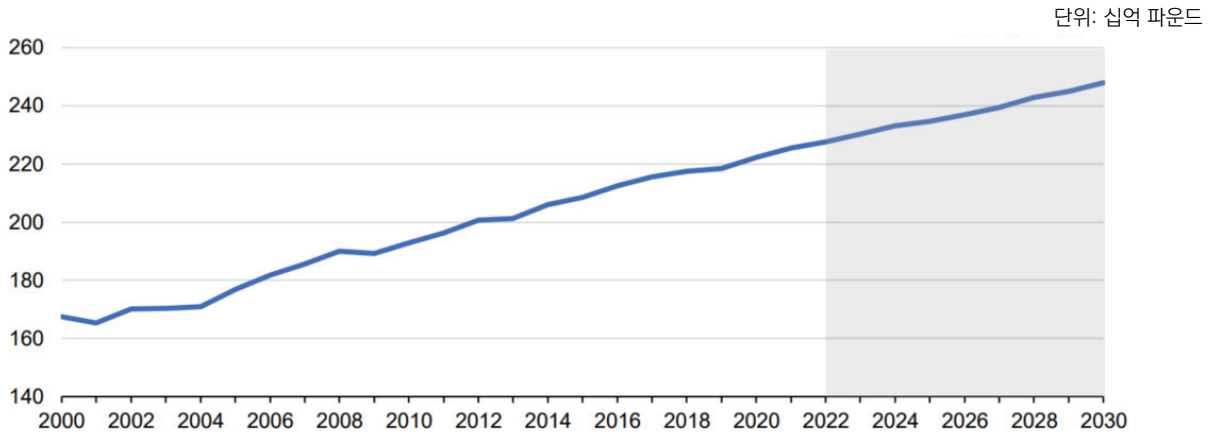
5 우유 및 유제품

- 원유(原乳) 생산량은 향후 10년 동안 연간 1.1% 증가하여 2030년에는 2,480억 파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으로 내수 성장이 더딘 가운데 젖소 사육두수는 전망기간 중기까지 비교적 보합세를 유지하다 후기에 이르러 증가하여 2030년에는 943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젖소의 마리당 평균 원유 생산량은 기술 및 유전학적 개량으로 인하여 2030년에 2만 6,295 파운드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유제품 소비는 향후 10년간 미국 인구 증가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치즈에 대한 수요는 치즈 가공식품의 소비 증가와 외식산업 성장으로 인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버터의 수요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반면 1인당 우유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전반적인 유제품 가격은 원유 생산 둔화와 수요증가에 기인하여 2021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2023-25년 유제품 가격은 유제품 생산업체의 적응으로 2022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반등하여 전망기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시장에서 미국산 유제품에 대한 수요는 향후 10년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탈지분유, 유장 제품, 유당 등 탈지고형분 함량이 높은 제품의 수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30년까지, 미국의 유제품별 수출 비중에서 유지방류와 탈지고형류는 각각 4.0%와 22.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USDA 농업전망 2030: 축산부문

| 그림 5. 미국 원유 생산량 전망 |



주: 1파운드는 0.434kg이며, 음영 부분은 전망기간을 나타냄.
 자료: USDA(2021). p. 43.

| 표 2. 쇠고기 장기전망 |

목록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초재고	백만 파운드	662	642	67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상업적 생산	백만 파운드	27,155	27,138	27,365	26,916	27,246	27,454	27,766	28,074	28,384	28,680	28,957	29,212
전년대비변화	%	1.1	-0.1	0.8	-1.6	1.2	0.8	1.1	1.1	1.1	1	1	0.9
농가 생산	백만 파운드	69	69	69	69	69	69	69	69	69	69	69	69
총 생산	백만 파운드	27,224	27,207	27,434	26,985	27,315	27,523	27,835	28,143	28,453	28,749	29,026	29,281
수입	백만 파운드	3,058	3,447	3,135	3,048	3,133	3,166	3,208	3,245	3,279	3,309	3,336	3,359
총 공급	백만 파운드	30,944	31,296	31,239	30,683	31,098	31,339	31,693	32,038	32,382	32,708	33,012	33,290
수출	백만 파운드	3,026	2,896	3,080	3,093	3,078	3,111	3,152	3,188	3,221	3,251	3,277	3,300
기말재고	백만 파운드	642	67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650
총 소비량	백만 파운드	27,276	27,730	27,509	26,940	27,370	27,579	27,891	28,200	28,510	28,807	29,085	29,340
1인당 소비량	파운드	58.1	58.8	58	55.9	56.4	56.4	56.7	56.9	57.2	57.4	57.6	57.8
전년대비변화	%	1.4	1.2	-1.3	-3.7	0.9	0.1	0.5	0.5	0.5	0.4	0.4	0.3
가격:													
육우(농장)	달러/ 100파운드	116.09	109.03	114.31	121.32	117.71	116.84	114.92	112.75	110.52	108.43	106.54	104.9
송아지(농장)	달러/ 100파운드	156.75	153.13	155.17	166.09	166	165.25	162.59	159.44	156.18	153.17	150.54	148.35
비육우, 5-지역	달러/ 100파운드	116.78	108.71	114	120.99	117.39	116.52	114.61	112.44	110.22	108.14	106.25	104.61
비육우 거세우, 오클라호마시티	달러/ 100파운드	142.23	136.8	138.5	148.25	148.16	147.49	145.12	142.31	139.4	136.71	134.36	132.41
가축사료:가격비율(육우/옥수수)	%	32.2	30.6	31.8	34.1	32.7	32.5	32.4	31.8	31.1	30.5	30	29.5
가축사육두수	천 두	94,805	94,413	95,000	95,000	93,632	93,757	94,114	94,458	94,768	95,017	95,197	95,306
육우사육두수	천 두	31,691	31,317	31,030	30,868	30,824	30,944	31,079	31,203	31,300	31,366	31,397	31,395
전체 소사육두수	천 두	41,044	40,651	40,400	40,259	40,236	40,376	40,532	40,676	40,794	40,880	40,932	40,951

자료: USDA(2021). p. 44.



USDA 농업전망 2030: 축산부문

표 3. 돼지고기 장기전망

목록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초재고	백만 파운드	559	646	525	575	610	620	630	640	650	660	670	680
상업적 생산	백만 파운드	27,638	28,157	28,510	27,791	28,099	28,349	28,808	29,263	29,510	29,931	30,141	30,333
전년대비변화	%	5	1.9	1.3	-2.5	1.1	0.9	1.6	1.6	0.8	1.4	0.7	0.6
농가 생산	백만 파운드	14	14.2	14.2	14	14	14	14	14	14	14	14	14
총 생산	백만 파운드	27,652	28,171	28,524	27,805	28,113	28,363	28,822	29,277	29,524	29,945	30,155	30,347
수입	백만 파운드	945	871	945	950	954	959	964	969	974	979	983	988
총 공급	백만 파운드	29,155	29,688	29,994	29,330	29,677	29,942	30,416	30,886	31,147	31,583	31,808	32,015
수출	백만 파운드	6,321	7,347	7,350	7,387	7,424	7,461	7,498	7,554	7,611	7,668	7,726	7,784
기말재고	백만 파운드	646	525	575	610	620	630	640	650	660	670	680	680
총 소비량	백만 파운드	22,189	21,816	22,069	21,333	21,634	21,851	22,278	22,682	22,876	23,245	23,402	23,551
1인당 소비량	파운드	52.4	51.3	51.6	49	49.4	49.6	50.2	50.8	50.9	51.4	51.4	51.4
전년대비변화	%	2.8	-2.2	0.7	-5	0.7	0.3	1.3	1.2	0.2	1	0.1	0
가격:													
비육돈(농장)	달러/ 100파운드	51.91	48.17	51.83	59.83	59.31	59.73	58.48	57.16	57.08	55.83	55.87	55.92
생축 (National base, live equivalent)	달러/ 100파운드	47.95	43.25	46.5	53.68	53.21	53.58	52.46	51.28	51.21	50.09	50.12	50.17
가축사료가격비율 (비육돈/옥수수)	%	14.4	13.5	14.4	16.8	16.5	16.6	16.5	16.1	16.1	15.7	15.7	15.8
비육돈사육두수	천 두	75,070	79,048	78,600	80,250	80,688	81,236	82,293	83,331	83,770	84,701	85,030	85,307

자료: USDA(2021). p. 45.

표 4. 닭고기 장기전망

목록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초재고	백만 파운드	845	937	900	915	958	970	983	996	1009	1023	1036	1050
연방 검역 도축	백만 파운드	43,905	44,602	45,060	45,570	46,242	46,843	47,478	48,107	48,748	49,403	50,050	50,709
전년대비변화	%	3.1	1.6	1	1.1	1.5	1.3	1.4	1.3	1.3	1.3	1.3	1.3
생산	백만 파운드	43,435	44,125	44,578	45,082	45,747	46,342	46,970	47,593	48,226	48,875	49,515	50,167
총 공급	백만 파운드	44,411	45,208	45,610	46,153	46,852	47,470	48,109	48,752	49,401	50,067	50,723	51,393
전년대비변화	%	2.9	1.8	0.9	1.2	1.5	1.3	1.3	1.3	1.3	1.3	1.3	1.3
수출	백만 파운드	7,103	7,246	7,260	7,482	7,599	7,730	7,858	7,987	8,116	8,245	8,374	8,503
기말재고	백만 파운드	937	900	915	958	970	983	996	1,009	1,023	1,036	1,050	1,063
총 소비량	백만 파운드	36,371	37,062	37,435	37,712	38,282	38,757	39,255	39,755	40,262	40,786	41,300	41,827
1인당 소비량	파운드	95.1	96.4	96.9	96	96.7	97.3	97.9	98.5	99.1	99.8	100.4	101.1
전년대비변화	%	2.8	1.4	0.5	-1	0.8	0.6	0.6	0.6	0.6	0.7	0.6	0.7
가격:													
육계(농장)	센트/파운드	48.2	36.4	40.3	43.5	43.7	44.3	45	44.8	44.3	43.9	43.6	43.4
육계(국가종합)	센트/파운드	88.6	70.8	78.8	85.2	85.5	86.8	88	87.7	86.7	85.9	85.3	84.8
가축사료가격비율 (육계/사료)	%	4.7	3.6	3.7	3.9	4	4	4.2	4.1	4.1	4	4	3.9

자료: USDA(2021). p. 45.



USDA 농업전망 2030: 축산부문

표 5. 칠면조 장기전망

목록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초재고	백만 파운드	303	233	215	230	235	236	235	233	231	229	227	226
생산	백만 파운드	5,818	5,738	5,770	5,832	5,862	5,880	5,907	5,938	5,970	5,995	6,019	6,040
총 공급	백만 파운드	6,133	5,991	6,001	6,080	6,116	6,136	6,162	6,192	6,224	6,248	6,270	6,291
전년대비변화	%	-1.2	-2.3	0.2	1.3	0.6	0.3	0.4	0.5	0.5	0.4	0.4	0.3
수출	백만 파운드	639	550	570	622	652	670	683	693	701	710	717	725
기말재고	백만 파운드	233	215	230	235	236	235	233	231	229	227	226	224
총 소비량	백만 파운드	5,261	5,226	5,201	5,222	5,229	5,231	5,247	5,268	5,293	5,311	5,327	5,342
1인당 소비량	파운드	16	15.8	15.7	15.5	15.4	15.3	15.2	15.2	15.2	15.1	15.1	15
전년대비변화	%	-1.1	-1.2	-1	-1.3	-0.6	-0.6	-0.4	-0.2	-0.2	-0.3	-0.3	-0.3
가격:													
칠면조(농장)	센트/파운드	57.9	70.3	69.9	70.2	69.5	69.9	69.5	70	69.7	69.6	69.6	69.5
칠면조 암컷	센트/파운드	89.2	106.1	105.5	106	104.9	105.5	104.9	105.7	105.3	105	105	104.9
가축사료가격비율 (칠면조/사료)	%	6.2	7.8	7.3	7.1	7	7.1	7.1	7.2	7.1	7.1	7	7

자료: USDA(2021). p. 45.

참고문헌

USDA. 2021. "USDA Agricultural Projections to 2030". Long-Term Projections Report OCE-2021-1.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국제 농업 정보(2021. 8.): 글로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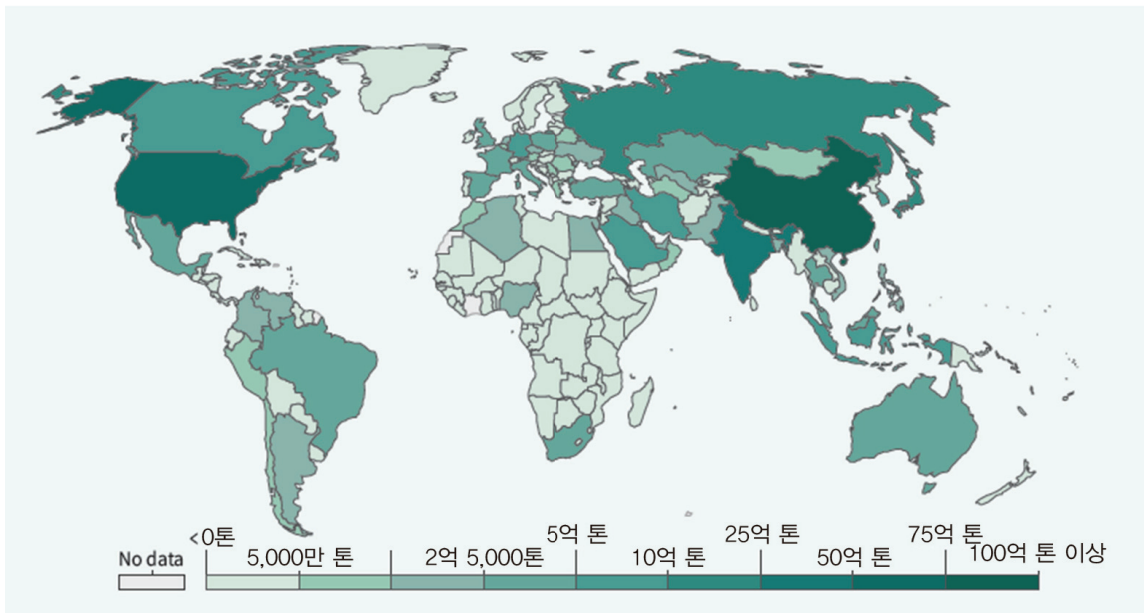
글로벌 농업·농촌·식품 동향

1 탄소세 논의 동향¹⁾

■ [배경] 지구온난화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는 추세임.

- 2016년 11월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된 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EU·일본 등은 2050년 탄소중립²⁾ 달성 목표를 제시함.

| 2019년 기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



자료: Our World in Data based on Global Carbon Project; BP; Maddison; UNWPP.

1)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탄소세 논의 동향”(나보포커스, 제34호, 2021.7.7.)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2) 인간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산림을 통해 흡수하거나 CCUS(CO2 포집·전환·저장)를 통해 제거하여 실질적인 순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함.



국제 농업 정보(2021. 8.): 글로벌

-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였고, 명시적인 ‘탄소세’는 도입하지 않은 상황임.
 - 배출권거래제³⁾(Emission Trading System, ETS)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사업장 간 잉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탄소세⁴⁾(carbon tax)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임.
- **[우리나라 탄소세 논의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에너지 관련 세제가 운영 중이나, 온실가스 저감 효과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음.
 -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 등 부과되고, 등유·중유 등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이 부과됨.

|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 현황 |

구분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개별소비세	-	-	63	17
교통·에너지·환경세	529	375	-	-
교육세	79.35	56.25	9.45	2.55
자동차세 주행분	137.54	97.5	-	-

주 1)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은 실제 적용되는 탄력세율 기재함.
 2) 경유가 휘발유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나, 현행법은 경유(375원/L)에 휘발유(529원/L)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함.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경우, 2022년 1월 폐지를 앞둔 상황임.
 자료: 해당 세목의 근거 법률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OECD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가 에너지 생산·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및 기타 외부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함.

- 제21대 국회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을 기준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임.
 - 용혜인 의원은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과 함께 「탄소세법안」을 발의하였으며, 탄소세입을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으로 배당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참고로, 제19대 국회에서는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탄소세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기후정의세법안(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등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함.

3)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이며, 2019년 기준 배출권 거래량은 3,800만 톤임(환경부, '2019년 배출권거래제 분석, 배출량 전년 대비 2.3% 감소', 2021.2.).
 4) 현행 에너지 세제로는 휘발유 등 에너지원에 대하여 소비량에 일정액 과세가 있음.



국제 농업 정보(2021. 8.): 글로벌

| 탄소세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

법률안		주요 내용
제21대 국회	탄소세법안 (용해인 의원, 2021.3.12.,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억제를 위하여 과세물품의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 ₂ e)을 기준으로 탄소세 부과 후 해당 세입을 탄소세 배당의 형태로 균등 지급
제19대 국회	기후정의세법안 (박원석 의원, 2013.6.28., 임기만료폐기)	온실가스 배출 억제와 원자력 발전소 비중의 단계적 축소를 위하여 기후 정의세 도입
	탄소세법안 (심상정 의원, 2013.7.10., 임기만료폐기)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성이 높은 과세 대상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탄소세 부과

주: 1tCO₂e는 이산화탄소 1톤 또는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 영향의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을 의미함.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계 탄소세 시행현황]** 25개국이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최대 US\$119/tCO₂e의 탄소세율을 적용⁵⁾ 중임.

- World Bank Group에 따르면, 25개국이 탄소세를 시행 중이며, 스웨덴의 탄소세율이 US\$119/tCO₂e로 가장 높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가 US\$1/tCO₂e 미만으로 가장 낮음.

| 탄소세 시행 국가 및 탄소세율, 배출권거래제 참여 현황 |

연번	국가	탄소세율	배출권거래제 참여 현황
1	스웨덴	119	EU-ETS
2	스위스	99	ETS
3	리히텐슈타인	99	EU-ETS
4	핀란드	68(수송용), 58(그 외)	EU-ETS
5	노르웨이	3(하한), 53(상한)	EU-ETS
6	프랑스	49	EU-ETS
7	아이슬란드	30(화석연료), 9(F-gases)	EU-ETS
8	아일랜드	28(수송용), 22(그 외)	EU-ETS
9	캐나다	21(연방정부)	ETS
10	덴마크	26(화석연료), 22(F-gases)	EU-ETS
11	포르투갈	26	EU-ETS
12	영국	22	EU-ETS
13	슬로베니아	19(화석연료)	EU-ETS
14	스페인	16	EU-ETS
15	라트비아	10	EU-ETS
16	남아프리카공화국	7	ETS
17	아르헨티나	6(대부분의 액체연료), 1(화석연료, 광물석탄, 석유코크스)	미참여
18	칠레	5	미참여
19	콜롬비아	4	미참여
20	싱가포르	4	미참여

5)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0' 자료 참조(검색일: 2020.05)



국제 농업 정보(2021. 8.): 글로벌

연번	국가	탄소세율	배출권거래제 참여 현황
21	일본	3	도쿄 등 지역단위로 운영 중, 2022년부터 일본 전체 확대 예정
22	에스토니아	2	EU-ETS
23	멕시코	<1(하한), 2(상한)	ETS
24	우크라이나	<1	2021년부터 ETS 시행
25	폴란드	<1	EU-ETS

주 1) EU-ETS는 EU 28개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대상국임.

2) 캐나다는 주별로 다른 세율 적용(28(브리티시컬럼비아주), 14(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21(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자료: World Bank, '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0', 2020.5.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북유럽 국가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함께 시행하되, 이중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직접세 감세, 산업용에 대한 탄소세 감면 등의 조치를 병행함.

- **(핀란드)** 1990년 세계 최초로 탄소세 도입하였고, 1997년 및 2011년 에너지 세제개혁을 통해 소득세 감세 및 기업의 사회보장비 삭감⁶⁾함.

- **(스웨덴)** 1991년 탄소세 도입 당시 법인세 삭감 및 저소득층·중산층의 소득세 감면 병행, 배출권 거래제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탄소세 인하⁷⁾함.

- **(덴마크)** 1992년 탄소세 도입 시 기존 에너지세 인하, 소득세·판매세·법인세 감면⁸⁾함.

■ 아시아의 경우 일본과 싱가포르가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2년 10월, '지구온난화대책세'라는 세목을 신설하여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 도입함.

- **(일본)** 2012년 10월, '지구온난화대책세⁹⁾'라는 세목을 신설하여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 도입함.

- **(싱가포르)** 2019년 동남아시아 최초로 탄소세 도입, 연간 25ktCO₂e 이상의 대규모 탄소배출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세 부과¹⁰⁾함.

■ 프랑스는 탄소세율 인상 유예, 호주는 2012년 탄소세 도입 후 2년 만에 폐지함.

- **(프랑스)** 2014년 탄소세 도입 후 탄소세율 인상을 시도하였으나, 유예된 상태¹¹⁾임.

6)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탄소세 감면 대신 배출권을 무료 할당함.

7) 산업용 전력 및 열병합 발전의 경우 탄소세 감면 조치 병행함.

8)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에 대하여 탄소세 감면, 2020년 탄소세 인상 법안 가결함.

9) 세율은 US\$3(¥289)/tCO₂e로, 기존의 석유석탄세에 더하여 부과되, 면세와 환급 조치 병행, 세수는 재생에너지 도입, 에너지 수급구조 개선 등에 집행함.

10) 2023년까지는 US\$4/tCO₂e의 세율을 부과하되, 2030년의 경우 US\$7.5~11.3/tCO₂e 수준의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며, 해당 세수는 산업 부분 에너지 효율 개선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 지원에 재투자할 계획임.

11) 2017년의 탄소세율 €30.5/tCO₂e을 2030년까지 €100/tCO₂e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2018년 11월,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인 '노란조끼(Gilets Jaunes) 시위'가 발발함에 따라 인상을 유예함.



국제 농업 정보(2021. 8.): 글로벌

- (호주) 2012년 7월 탄소세 도입 후 호주 내 광산, 에너지, 유통 기업 및 최종 에너지 소비자의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2014년 7월, 시행 2년 만에 폐지함.

■ **[시사점]** 각국의 탄소세 시행 및 논의 사례는 탄소세 도입 시 급격한 조세 부담 증가,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 규제 문제, 조세저항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 시사함.

- 북유럽 국가의 경우, 직접세 등의 감면, 배출권거래제와의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급격한 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함.

- 탄소세 도입 후 조세 저항이 발생한 프랑스 및 호주의 사례 참고 가능함.

■ 탄소세 도입 시 현행 에너지세제와의 연계, 탄소 다(多)배출업종의 부담 심화, 역진성의 보완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 검토가 필요함.

- 2022년 1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일몰 종료 예정됨에 따라 사전에 기존 에너지세제의 통합·유지·보완 및 세목 신설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 산정방식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탄소세 부과 시 석유화학, 철강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률 하락 및 탄소 저감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의 증가 등이 예상되므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탄소세 도입 시 초래될 수 있는 역진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탄소세 감면, 탄소세 세수를 활용한 저소득층 지원 등 검토가 필요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7.1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2021. 8.): 미국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1 대형마트가 SNAP에 미치는 영향¹⁾

- 보충 영양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은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식품 지원 프로그램으로 SNAP 수혜자들은 지정된 곳에서 지원금을 통해 식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수혜자들의 접근성을 낮추는 영향도 있음.
 - 2016년 기준으로 SNAP에는 약 78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SNAP 수혜자들의 84%는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수혜자의 64%는 청소년, 노인 그리고 장애가 있는 성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형마트(super stores)의 출현은 SNAP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던 소매점들에게 위협이 됨과 동시에 SNAP 수혜자들의 식품 구매력을 증가시키고 있음.
 - 1994년부터 2015년까지 대형마트 한 개가 입점함에 따라, 평균적으로 반경 5km 이내에 있는 0.25개의 슈퍼마켓, 0.05개의 식료품점, 편의점 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 동시에, 반경 5km 내에 있는 소매점들에서 사용되던 191,000달러에 달하는 SNAP 지원금이 대형마트로 이전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인하여 소매점들이 폐업하지만, 소비자들의 접근성은 감소하지 않음.
- 대형마트를 통한 저렴한 상품 구매로 인해 구매력이 상승한 소비자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소매점보다 대형마트에서 SNAP 지원금을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남.
 - 대형마트에서의 구매비용이 3% 저렴²⁾하다고 가정했을 때, 2015년 기준 전체 SNAP 수혜자들은

1)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Super Stores' Impact on the Availability of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Approved Stores"(2021.6.24.)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rs.usda.gov/>).

2)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월마트 등에서 일반 소매점에 비해 브랜드가 있는 식료품은 6~7% 저렴하고, 월마트 등이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3~8% 저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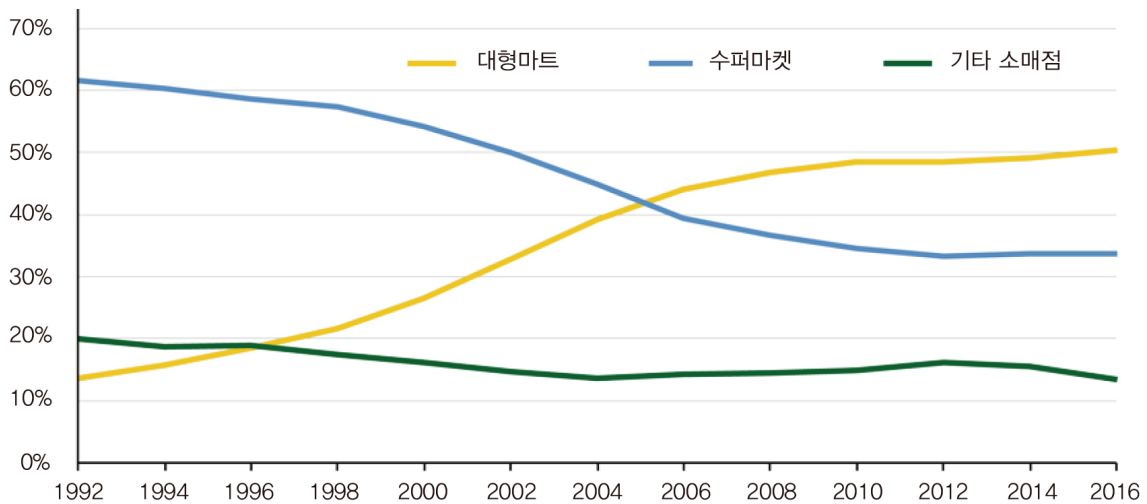


국제 농업 정보(2021. 8.): 미국

2015년에 1억 860만 달러의 구매력 상승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 이는 전체 SNAP 예산의 0.15%를 차지함.

-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에서의 SNAP 사용을 증가시켰고, 현재 대형마트에서 사용되는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과거에는 대형마트에서 과일, 채소, 신선육류 등 영양분이 많은 식품을 판매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슈퍼마켓이나 지역 식품점처럼 건강한 식습관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판매함.

매장 유형별 SNAP 지원금 사용 비율



출처: 미국농무부 경제조사국.

- SNAP 매장에 대한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온라인 구매에도 SNAP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농촌에서의 온라인 구매는 상대적으로 어려움.
 - 일반적으로 대형마트의 입점이 소비자의 접근성을 낮추지 않았으나,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인하여 주변 소매점이 사라진 경우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구매로 접근성 부족을 해결하였음.
 - 하지만, SNAP 지원을 받는 농촌 거주자들은 인터넷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온라인 구매를 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7.1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2021. 8.): 미국

2 미국 식품 공급 사슬의 수자원 사용³⁾

- 미국은 세계적으로 물 소비량이 많은 국가이며, 특히 농업에서도 수자원의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은 인도와 중국에 이어 담수를 취수하는 양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음.
 - 미국 내 소모성(consumptive) 물 소비량의 80%를 농업이 차지하고 있음. 특히, 서부 지역에서는 이 수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미국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을 겪는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수자원 부족으로 인한 국가 식량 공급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 U.S. Drought Monitor⁴⁾에 따르면, 2012년에 미국 농업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으며, 특히 12월에는 6.7%의 미국 영토가 심각한 가뭄(D4)을 경험함.
 - 2018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까지 미국의 67.1%가 가뭄을 경험하였고, 가뭄뿐만 아니라, 폭염, 홍수, 사이클론, 산불 등으로 인한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짐.
- 수자원 사용량이 가장 많은 농식품은 신선 채소이며, 식품 공급 사슬에서는 생산 단계에 수자원이 대부분 투입됨.
 - 2012년 기준 신선 채소를 생산하는데 연간 가장 많은 수자원이 투입(5.1조 갤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견과류, HMR 등을 포함한 기타 식품(4.5조 갤런), 돼지고기, 소고기 및 기타 육류(2.5조 갤런) 등에 많은 수자원이 투입됨.
 - 하지만, 수자원이 많이 투입된다고 해서, 식료품의 단위 무게당 혹은 단위 부피당 수자원 필요량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식품 공급 단계 중에서는 작물 생산에 가장 많은 수자원이 투입되는 것(72%)으로 나타남. 뒤이어 가축 생산에 수자원이 많이 투입되며, 에너지, 가공 및 포장, 유통 및 마케팅 등에 사용되는 수자원은 생산에 투입되는 수자원의 양에 비해 미미함.
 - 육류 생산에 있어서 가축 생산에 직접 소비되는 수자원의 양보다 사료 작물 생산에 투입되는 수자원이 비중이 높으며, 특히 가금류 생산에 있어서 가축이 직접 소비하는 수자원의 양보다 사료 작물 생산에 사용된 수자원의 양이 5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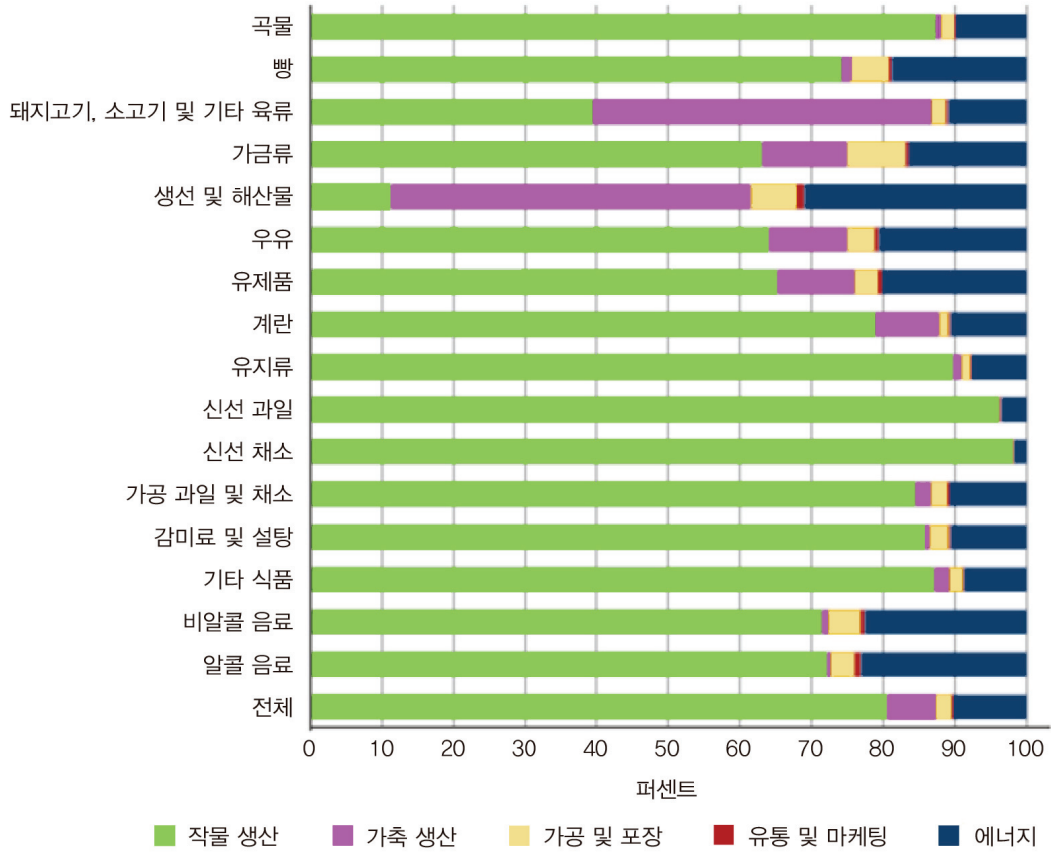
3)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의 "Tracking the U.S. Domestic Food Supply Chain's Freshwater Use Over Time"(2021.7.16.)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ers.usda.gov/>).

4) U.S. Drought Monitor는 가뭄 등급을 D0(abnormal drought)부터 D4(extreme drought)의 5단계로 구분함.



국제 농업 정보(2021. 8.): 미국

가정 소비 식품의 공급 사슬에서 담수가 사용되는 비율



■ 수자원 사용의 증가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탄소 배출량, 토지 사용 등 여러 요소와 함께 고려하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농산물 가치사슬의 환경 영향을 살펴보면, 농식품 생산 단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배출량, 토지 이용, 수자원 사용이 나타나며, 가공 및 포장 단계에서는 산림 생산물이 사용되고, 소비 단계에서는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7.26.).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2021. 8.): 유럽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1 코로나19 대응 정책 평가와 제안¹⁾

- 코로나19 대응 주요 정책에 관한 평가 결과, 많은 부문에서 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나, 몇몇 부문에서는 시장 왜곡, 재정투입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책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부문 코로나19 대응 정책 평가 |

정책 방향	효과성	효과를 제한한 주요한 원인
교통 및 자유 이동	높음	• 없음.
경쟁	중간	• 단일 시장 내 왜곡 발생 가능성 • 정부 보조금(state aids)으로 인한 문제
식품 안전	높음	• 없음.
공동농업정책 적용의 유연성	높음	• 회원국별 지원으로 인한 몇몇 문제 발생
EAFRD 하의 예외적 일시 지원 정책	높음	• 없음.
공동시장 경쟁 법안의 개정	낮음	• 실제적 활용에 대한 지식 부족 • 합의와 결정으로 발생한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부족
일시적 사적 저장 지원	낮음	• 제한된 범위 및 재정 • 과도한 행정력 필요
와인 부문 특별 지원	낮음	• 불평등하고 적절하지 않은 국가 정책과 재정투입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 발생 • 고품질 와인 생산 및 지리적 특성에 반하는 조기 수확 제도 • 팬데믹 기간 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부족
채소 및 과일 부문 특별 지원	높음	• 없음.
특정 농업 부문에 대한 홍보 지원	높음	• 없음.

- 2021년부터의 유럽연합 다년도 재정투입 계획과 공동농업협정을 바탕으로 미래의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었음.

1) 유럽의회조사처의 “European agriculture: a sector-based analysis of food systems and market resilience”(2021.5.28.)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enrd.ec.europa.eu/>).



국제 농업 정보(2021. 8.): 유럽

- **(식량 비축)** 공동농업정책(CAP) 2014-2020 기간 동안 매년 4억 유로를 투입하여 총 28억 유로가 7년간 사용됨. 미래에는 이러한 식량 비축이 농가의 소득을 지원하고 갑작스러운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함. 하지만 직불금제도와 중복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CAP 2021-2027에서도 식량 비축 정책에 매년 4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하였으며, 추가적인 재정투입의 여지도 남겨두고 있음.
- **(공동농업협정의 제한된 역할)** 다년도 재정투입 계획 2021-2027에 따르면, 공동농업정책에 투입되는 재정이 12%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이로 인해 미래에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공동농업정책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음.
- **(변화된 소비 패턴 반영)** 팬데믹으로 인하여 소비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했고, 동시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푸드뱅크 등을 통한 식품 지원과 값싼 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음. 이를 반영하여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연속적이고 적절한 영양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의 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제안됨.

| 미래의 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 정책 제안 |

정책 방향	세부 내용
식품 시스템적 접근	• 미래의 위기관리 정책을 수립을 위해서는 식품 공급 사슬의 전 범위에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장 관리 정책	• 시장 관리 정책에 대한 평가 필요 • 식품 시장 운영자들이 미래의 식품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 마련
식량 비축(crisis reserve)	• 농가 직불금제도와 식량 비축 제도의 비연계(decoupling)는 위기 기간의 유럽연합의 재정적 가용성을 강화
정부 보조금(state aids)	• 국가 지원의 시장에 대한 중단기 효과가 경쟁 왜곡을 일으키지 않는지 감시할 필요
연속적이고 적절한 식품 공급	• 식품 지원 프로그램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강화할 필요 존재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7.05.).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유럽 농촌 개발정책의 영향과 도전²⁾

- 농촌은 구조적 약점과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

2) 유럽연합위원회의 “Management plan 2021 -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2021.3.2.)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ec.europa.eu/>).



국제 농업 정보(2021. 8.): 유럽

- 농촌은 1,030만 개의 농가와 1억 5,700만 ha의 농지를 포함하며, 2,200만 명에게 농식품(농업, 식품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일자리를 제공함.
- 인구감소, 높은 사회적 배제 및 빈곤율, 기초 인프라 및 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 농촌은 도시에 비하여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음.
-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농촌개발정책은 유럽농촌개발펀드(EAFRD)(1,000억 유로)와 회원국 재정 투입(총 610억 유로)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음.
- 농촌 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가장 많은 금액이 사용되었고, 환경보호·자원 효율성 증대, 기후 변화 적응·피해 방지에 많은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
- 이 기간에 투입된 공동농업협정 직불금은 약 52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보호함.

| 공동농업협정의 농촌개발 효과에 대한 평가 |

평가 기준	평가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llar 1은 농가의 안정성 유지에, Pillar 2는 농촌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됨. • LEADER 프로그램은 사회적 포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llar 2 정책은 행정적으로 복잡해, 경제적으로 불리한 집단에겐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혁신 가능성이 밝혀짐.
일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illar 1과 Pillar 2는 일반적으로 각각 계획됨.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 마을 재생, 지역 개발 정책은 농촌의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게 진행됨. • 농가 지원에 비해 농촌개발프로그램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배정되어,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유럽의 부가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투입은 사회적 인프라와 서비스가 더 필요하지만, 농가 위주로 정책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적인 농촌의 쇠퇴를 막는 것에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남.

-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되는 공동농업협정에는 총 3,439억 유로가 투입될 것으로 나타남.
- Pillar 1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2,586억 유로가, Pillar 2에는 778억 유로에 ‘Next Generation EU’ 자금인 75억 유로가 추가로 투입됨.
- ‘Next Generation EU’ 자금은 공동농업협정의 Pillar 2에 투입되는 자금을 포함하여 모든 부문에 7,500억 유로가 투입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고, 환경친화적이고 디지털화,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용됨.
-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투입되는 공동농업협정 재정은 2023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공동농업협정으로의 전환 과정에 사용될 것임.



국제 농업 정보(2021. 8.): 유럽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는 공동농업협정이 EU 그린딜 목표 등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회원국의 문제 해결 필요성을 제안하였음.
 - **(고용 문제)** 이탈리아의 낮은 농촌 고용률 및 높은 성별 격차, 불가리아의 교육 및 훈련 부족 문제, 포르투갈의 농촌 청년층의 낮은 직업 기회 등을 지적함.
 - **(인구감소)** 스페인, 헝가리, 루마니아 등에서 농촌 인구 감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소규모 마을로 구성된 농촌지역(Zeeland)은 특히,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한 더 큰 위기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남.
 - **(고령화 및 세대 재생)** 핀란드와 동부 독일의 농촌에서는 고령화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2032년까지 농촌에서 인구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농업을 청년층에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아동 보육, 교육, 의료 및 교통 서비스의 확충이 농촌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 접근성)** 2025년까지 광대역 접근성을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히, 그리스와 폴란드에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LEADER)** 일자리 창출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개발, 재정 구조 계획, 농촌 간 협력을 지원해야 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7.1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제 농업 정보(2021. 8.): 일본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1 농림수산성 산림·임업 기본계획¹⁾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1년 6월 15일, 산림·임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본 계획은 5년마다 발표함.

- 새로운 기본계획에서는 산림·임업·목재 산업에 의한 녹색성장을 목표로 산림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임업·목재 산업의 지속성을 성장·발전시켜, 2050 탄소중립을 고려한 풍부한 사회·경제를 실현하고자 함.

□ 산림·임업·목재 산업을 통한 녹색성장

■ 기본계획에서는 임업·목재 산업이 가진 지속성을 향상하고 성장·발전시켜 사람들이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함. 사회·경제생활 향상과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녹색성장을 실현을 위해 다음의 5가지 정책을 추진함.

- **(1. 적절한 산림자원 관리)** 산림자원 순환이용을 추진하고, 다양하고 건전한 산림을 유도하기 위해 재조림²⁾ 및 복층림화³⁾를 추진하며, 천연생림⁴⁾보전관리 및 국토강화를 위한 대응을 가속화함. 아울러 간벌·재조림을 통해 산림 이산화탄소 흡수량 확보·강화를 도모함.
- **(2. 새로운 임업을 위한 대응 추진)** 신기술을 도입하여 벌채부터 재조림·숲가꾸기에 이르기까지 흑자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임업을 추진함. 임업 종사자의 소득과 노동 안전 향상을 도모하며, 장기간에 걸쳐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임업 경영체를 육성함.

1) 일본 농림수산성 “森林·林業·木材産業による「グリーン成長」を目指して~新たな「森林・林業基本計画」を決定~”(2021.6.15.)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https://www.rinya.maff.go.jp/j/press/kikaku/210615.html>).

2) 인공림을 벌채하고 그 적지에 인공조림을 시행함.

3) 인공갱신에 따라 조성되어 수령, 수고가 다른 수목으로 구성된 산림을 의미함.

4) 재해나 벌채 등에 의해 소실된 후 거의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은 채 자연적으로 재생된 산림을 말함.



국제 농업 정보(2021. 8.): 일본

- (3.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외국 목재 등에 대항할 수 있는 국산재 제품의 공급 체제를 정비하여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중소 지방 공장 등은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다양한 품목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현지 경쟁력을 향상함.
- (4. 도시 등에 '제2 산림' 만들기) 중고층 건축물 및 비주택 분야 등에서 새로운 목재 수요 획득을 목표로 함. 목재를 이용하는 것에 의해 도시에 탄소를 저장하여 온난화 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음.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목재제품의 수출을 촉진함.
- (5. 새로운 산촌 가치 창조) 산촌 지역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 진흥에 더하여, 산림 서비스산업 육성, 관계인구⁵⁾ 확대를 목표로 함. 마을을 유지하기 위한 농림지 관리·이용 등 협동 활동을 촉진함.

□ 새로운 기본계획 주요 내용

- 기본계획에서는 산림·임업 기본법에 기반하여 산림의 다원적 기능 발휘 및 임산물 공급 및 이용에 관한 목표를 제시함.

정책	주요 내용
산림 다원적 기능 발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계획제도의 운용을 재검토하여, 적절한 벌채 갱신 추진(벌채조림신고제도 재검토와 지도 강화 등) • 우량종묘 생산체제 정비, 정영목 등을 활용한 저비용 조림, 야생동물 대책 등 추진 • 간벌·재조림 추진에 의한 산림 이산화탄소 흡수량 확보 및 강화(간벌 등 특별조치법) • 산림환경 양여세⁶⁾를 활용한 침광혼교림⁷⁾화, 희귀한 산림생태계의 보호 관리 • 국토 강화 5개년 가속화 대책에 근거하여 치산사업(治山事業) 추진 • 재해 발생 형태 변화에 대응하여 세세한 치산담⁸⁾ 배치, 산림토양 보전 강화, 유목(流木) 대책, 규격구조(structural code)가 높은 임도 정비 추진 • 농림복합적인 소득확보, 활엽수, 버섯 등 지역자원 활용, 농림지 관리 이용 추진 • 산림 서비스산업 추진, 관계인구 확대 • 식수 등 국민 참여 산림 조성 추진
임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한 임업 경영체 육성 • 생산성 및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임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영목 등을 통한 저비용 조림과 수확 기간 단축 - 자동조작 기계 등을 통한 노동력 절감·노동 강도 완화 • 임업 경영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관리권 설정 등에 의한 장기적인 경영 확보 - 법인화·협업화, 산업복합형 경영체 등 경영 기반 강화 - 경영 플래너 육성 등 경영력 강화 등 • 인재 육성·확보(신규 취업인 지원, 단계적 인재 육성) • 임업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타 산업 수준의 소득, 능력 평가, 노동 안전 대책 강화)

5) 특정 지역 단순 방문자, 거주자는 아니지만 여가·업무·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를 의미함.

6) 국가가 징수한 국세 중 일부를 특정 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조세를 말함.

7)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여 있는 산림을 의미함.

8) 유역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억제하기 위해 계류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장벽으로 사용재료에 따라 돌담, 콘크리트담, 강제(鋼製)담, 통나무담, 돌망태담 등이 있음.



국제 농업 정보(2021. 8.): 일본

정책	주요 내용
임산물 공급 및 이용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목 안정공급(ICT 도입 등을 통한 상물(商物) 분리, 공급망·매니지먼트 추진) •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경쟁력 강화) 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s)·KD재, 집성재⁹⁾ 등 저비용공급체제 정비, 공장 간 연계·재편 등을 통한 규모 확대 - (현지 경쟁력 강화) 판재·평각 등 다품목 생산을 위한 시설 교체, 대경재(말구직경 30cm 이상 원목) 활용 - (JAS 제품 공급 촉진) JAS제 생산·이용을 위한 조건 정비, 관계자에 의한 JAS 수수료 수준, 하자보증제도 검토 등 촉진 - (기타) 국산재 비율이 낮은 분야, 가구 등에 이용 촉진 • 도시 등에 목재 이용 촉진(내연성 부재 및 CLT 등 민간 비주택 분야 이용 등) • 목재 등의 수출 촉진, 목질 바이오매스 이용(열전 이용, 자원 지속적인 이용)
국유임야 관리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보전 등 공익적 기능 유지 증진, 임산물 지속적·계획적 공급, 국유임야 활용을 통한 지역산업 진흥과 주민 복지 향상 • 상기에 이바지하는 목표로 국유임야 관리 경영추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화(산림클라우드 도입, 목재 ICT 생산유통 관리, 임업 디지털 전환 등) • 코로나 대응(수요 급감 시 생산 조정·조림 전환, 재택근무에 대응한 리폼 수요 반영) • 동일본대지진 부흥·창생,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과 조화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7.12., 19.).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21¹⁰⁾

- 일본 정부는 2021년 6월 18일,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기본방침 2021(이하 기본방침)을 발표하였음.
 - 제2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2020.12.21.)에서 제시한 기본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만든 정책 패키지 및 개별 정책에 대해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함.
-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라 지역경제 및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편, 지방 이주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이와 동시에 원격근무를 기회로 인구 이동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등 국민의 의식 및 행동이 변화함.
-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본 기본방침에서는 ① 지역이 자체적으로 특색 및 상황을 고려하여 자주적·주체적으로 대응, ② 도시에서 지방으로 새로운 인구 및 일자리 유입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방문하고 싶고, 지속적으로 살고 싶어지는 매력적인 지역을 실현해 나감.
- 이를 실현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에 유의하며 종합전략에서 제시한 정책체계¹¹⁾를 기반으로 대응을

9) 판재 및 소각재 등을 섬유방향으로 서로 평행하게 접착시켜 만든 접착 가공 목재를 말함.

10) 일본 내각부 “まち·ひと·しごと創生基本方針2021について”(2021.6.18.)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https://www.chisou.go.jp/sousei/info/#an20>).

11) (기본 목표) ① 경제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조성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지방과 연계를 구축하여 지방에 새로운 사람 유입을



국제 농업 정보(2021. 8.): 일본

추진하는 데 있어, 새롭게 3가지 관점(사람, 디지털, 그린(친환경))을 중점적으로 지방 창생 대응을 개선하고,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본부를 사령탑으로 정책지표를 확실히 세워 모든 부처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함.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람들의 의식·행동이 변화하였음. 이를 기반으로 도시에서 각 지역으로 인구 및 일자리 흐름 창출을 추진함.

-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격근무 시행률 급증, △특히 젊은 층의 지방에 대한 관심 증가, △도쿄에서 지방으로 개인·기업 진출 등 변화가 발생함.

■ 이에 따른 각 지역의 특색을 기반으로 자주적·주체적인 대응을 촉진하고자 함.

- △감염병 및 인구감소 등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화에 관한 관심 고조, △ 지역 활성화로 연결되는 재생 에너지 및 새로운 가치관으로써 지역 창생 SDGs에 대한 관심 고조

- 상기 내용을 기반으로 ❶ 사람(지방으로 사람 유입 창출, 인재 지원), ❷ 디지털화(지방 창생에 이바지하는 디지털 전환 추진), ❸ 그린(지방이 이끄는 탈탄소사회 실현) 관점에서 지방 창생을 추진

□ 사람: 지방으로 인구 유입 창출, 인재 지원

■ 일본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인구 흐름에 변화가 생겼음.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생활 의식·행동 변화 조사(2021.6.4. 내각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격근무 시행률이 상승하여 이에 따라 도쿄권 거주자의 지방 이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

- 이러한 흐름에 따라 지방에서 일하기 쉽고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이주로 이어지는 인구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함.

- 이주하는 데 있어 가장 높게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일자리 및 수입 확보로 조사되었으며, 원격근무 확대에 따라 직장을 옮기지 않아도 이주가 가능해지면서 지방 이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임.

□ 디지털화: 지방 창생에 이바지하는 디지털 전환 추진

■ 디지털 전환(DX) 추진을 통해 ❶ 지리적·시간적 제약 요인과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 같은 서비스 제공,

만들어 내며, ③ 결혼·출산·육아 실현, ④ 사람이 모이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 조성 (횡단적 목표) ① 다양한 인재 활약 추진, ② 새로운 세대 흐름 활용 추진



국제 농업 정보(2021. 8.): 일본

②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조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 과제 해결 및 매력 향상으로 연결함.

- 이를 위해 정보통신 기반의 정비 및 인재 지원, 데이터 활용 기반 정비,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 등을 추진함.

□ 그린: 지방이 이끄는 탈탄소사회 실현

■ 지역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재생 에너지를 도입하는 등 지방에서 탈탄소화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과제 해결을 실현할 수 있는 ‘지방 창생과 탈탄소 선순환’ 추진을 위해 대응함.

- 이를 위해 인재 지원 및 관련 정보공유·민관 협동 추진, 지방 창생 SDGs 추진, 디지털기술 활용, 각 분야 탈탄소화 대응 등을 추진함.

사람	디지털	그린
<p><지방 창생 원격근무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 사무실 정비 및 이용 촉진 • 정보 제공·상담 체제 강화 등 <p><기업 지방 이전 등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거점강화세제 등을 통한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 정부 기관 이전 추진 등 <p><지역으로 인재 지원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창생 인재 지원제도 • 기업판 고향세(인재 파견형) • 전문가 인재 사업 등 <p><육아세대 이주 등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 세대 이주 추진 • 지방공공단체 이주 지원체제 강화 • 결혼·출산·육아하기 좋은 환경 정비 <p><관계인구 창출·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인구를 중개하는 민간단체를 모델 사업으로 지원 <p><매력 있는 지방대학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 과제 및 수요에 대응한 특색 있는 대응 및 조직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검토 • 빛나는 지방대학 만들기 등 	<p><5G 등 정보통신기반 조기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기지국 및 광섬유 정비 • 로컬 5G 보급·전개 촉진 <p><디지털 분야 인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전문 인재 지방공공단체로 파견 <p><데이터 활용기반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공단체에 의한 데이터 활용기반 정비·공개 대응 촉진 • RESAS, V-RESAS 활용 사례 수집, 공유 <p><디지털 전환 추진을 통한 지역 과제 해결, 지역 매력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농림수산업, GIGA스쿨 구상, 원격 의료, 자율주행 등 대응 촉진 • 슈퍼시티¹²⁾ 구상 조기 실현 	<p><그린 분야 인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 에너지 도입 및 지역활성화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 인재 지방공공단체로 파견 <p><관련 정보 공유 및 민관 협동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탄소에 관한 정보공유 체계 확충 • 지역의 탈탄소화 계획 책정 지원 • 탈탄소사업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및 주민 서비스 확충을 한 번에 진행하는 민관협동 대응 추진 <p><지방 창생 SDGs 등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탄소 관점을 추가한 SDGs 미래 도시 선정 등 <p><지역사회·경제를 지탱하는 분야의 탈탄소화 대응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도리 식량 시스템 전략을 기반으로 한 대응(농산어촌의 에너지 자산지소 등) • 정영목(elite tree) 등 이용 확대 • 전기차 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수송 시스템 도입, MaaS¹³⁾ 도입 등을 통한 대중교통 편리성 향상 • 비주택·고층건축물 등에 목재 이용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1.07.26., 08.02.).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불편 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지역 체제를 말함.

13) Mobility as a Service의 약어이며, 모든 교통수단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동 최적 방법을 찾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함.

e-세계농업 제10호 (2021. 8.)

발행 2021년 8월 18일
발행인 김홍상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팩시밀리 061-820-2211
<http://www.krei.re.kr>
편집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61-332-7120 팩시밀리 061-333-2247
E-mail: dongyt@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